

이 의 신 청 서

KBS제주방송국 1948 암살

방송심의규정 위반

시정 및 제재 촉구

2021. 12. 07.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목 차

■ 민원내용	4
■ 민원처리 결과	4
■ 이의신청	5
1. 주요내용	5
2. 관련규정	8
3. 심의규정 위반사항	11
■ 불임	
1. 방송통신 심의 규정 위반사항 세부 내용	12
2. 시민의견 1	30
3. 시민의견 2	41

민원내용

- 민원인 :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 피민원인 : KBS제주방송국
- 접수기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접수일자 : 2021년 4월 26일
- 민원내용

제주KBS방송국 4월 2일 특집, <암살1948> 방송은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를 위반하였으므로 동법 제100조(제재조치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7조(오보정정), 동규정 제59조(제재조치의 요청)에 의거하여 역사왜곡 정정, 관련자 문책, 재발방지가 될 수 있도록 귀 기관의 공정한 심의와 제재조치를 요청함

- 첨부서류 1.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위반사항 1부.
2. 역사학자 의견서 1부.
3. 보도자료(성명서) 1부.

민원처리결과

- 고유번호 : 1595983
- 방송시간 : 2021-04-02 19:40:00
- 처리주무부서 : 방심위 광주사무소(062-653-4322)
- 처리결과

검찰은 한라산 무장대 총책인 김달삼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문상길 중위가 그의 부하인 손선호 하사에게 총을 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문상길 중위는 “동족상잔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것으로, 동 방송에 대해 제9차 방송자문특별위원회(6.1)에서 논의한 결과, 방송이 전반적으로 제주4·3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보고서, 역사학자 및 관련전문위원의 의견 등 나름의 근거에 기반을 두어 제작된 바 이를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을 재조명하고 알리고자 하는 방송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문제 삼기 어렵다는데 위원 다수가 의견을 모았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1. 주요내용

다큐 암살 1948 방송(이하 ‘방송’)은 영웅 박진경 대령을 음해하고 암살범 문상길 중위를 미화한 역사왜곡입니다. 방송은 제주4·3사건을 전체적으로 미군정의 강경 진압이 원인인 것으로 설정하고, 미국에 대하여 계속 부정적인 감정을 갖도록 나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방송은 공산폭동을 진압하여 제주도민을 지키려고 한 박진경 대령은 폄하하고, 남로당의 사주를 받고 남로당의 지시에 따라 박진경 대령을 암살하여 대한민국의 건국을 저지하고 제주를 공산치하로 끌고가려 한 문상길 중위는 영웅으로 왜곡합니다. 방송 내용 전반에 걸쳐 박진경 대령에 대해 거짓을 동원하여 나쁘게 인식하도록 합니다. 박진경 대령이 양민을 학살하고 상관으로서 만행을 부렸다고 설명하며 부정적 이미지를 덧칩니다. 국민을 분노하게 만드는 악의적인 방송에 대해 제재 조치를 하지 않은 귀 기관의 결정은 방송법 등 관련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위반 사실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첫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합니다.

현재결정(2000헌마238)에 의하면 4·3은 공산폭동반란입니다. 폭동반란에 가담했고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했던 문상길을 영웅화하는 방송은 우리 헌법 제4조가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히 위반합니다. 방송은 호국영령 박진경을 학살자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저지하려 했던 반역자 문상길을 영웅으로 둔갑시키려고 한 역사왜곡이자, 남로당 세력을 칭송한 반국가적 방송이었습니다.

둘째, 사회통념에 위반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00헌마238사건에서 살인자는 명예회복의 대상인 4·3희생자가 될 수 없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결정에 따르면 문상길 같은 살인자는 명예회복의 대상인 희생자에서 제외됩니다. 조선 경비대 내의 남로당 프락치였으며 경비대의 상관을 살인한 국사범으로서의 살인자를 열사로 미화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셋째, 공정성과 균형성을 위반합니다.

암살 1948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주제를 다룰 때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 역사적 진실을 알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KBS제주방송국은 방송내용, 배역, 출연자 설정자체가 공정성과 균형성을 현저하게 위반하였습니다. 프로듀서, 나래이션, 역사학자, 4·3위원 등 출연자 전원이 좌편향 인식을 지닌 인사들로 좌편향 입장의 말들 뿐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박진경 대령 측 입장을 대변하거나 좌편향 입장에 대한 반론 기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배역에 있어서 군경, 검찰은 어둡고 험악한 모습을 하게 했고, 문상길 배역과 진압 과정에서 대상자들은 선한 이미지나 흡박받는 이미지를 담았습니다. 공식적인 정부의 4·3사건 진상보고서와 관련 자료 중에서 박진경 대령과 대척점에 있었던 인물들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골라서 반영하고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였습니다.

넷째, 객관성에 위반합니다.

암살 1948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 미화, 축소, 은폐, 포장하여 특정 주장을 일방적으로 정당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면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하였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부각시켜 역사적 인물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방송통신심의규정의 기본원칙인 공정성이나 객관성의 범주내에서 가능합니다. 공정성과 객관성 기준은 다양성을 억압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다양성을 빙자하여 다양성으로 포장된 거짓을 배격하는 도구가 공정성과 객관성인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는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인 자료가 그 생명입니다. 이 경우 객관적인 1차 자료는 당시 미 군정의 자료, 남로당 내부 자료 등입니다.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가졌던 박진경 대령과 대척점에 있었던 경비대 남로당 프락치 살인범들을 포함한 좌편향 인사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취하여 교묘히 사실을 왜곡하였습니다. 객관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자의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귀 기관의 민원 처리결과 내용은 자의적인 심사기준을 적용하기까지 합니다. 그 근거는 민원 처리결과 내용에서 ‘인물을 재조명하는 취지이면 그 내용이 심의규정을 위반해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되고, ‘방송이 나름의 근거를 두어 제작하기만 하면

왜곡은 없다'는 뜻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물을 재조명하는 취지도 심의규정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고, 방송이 나름의 근거(4·3보고서는 오류투성이인 좌편향 보고서로서 보고서 서문에 진실규명을 후대에 미룬다는 언급이 있음)로 삼은 경우라도 오류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섯째,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이므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했어야 합니다. 개인방송은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여 심사기준을 완화할 수 있지만 방송사업자인 KBS가 제작한 방송은 심사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악의적인 모함이나 사실의 왜곡까지 방송에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입니다. 이에 의하면 귀기관의 결정은 위법합니다.

일곱째, 명예훼손 사실을 간과하였습니다.

명예를 훼손하는 방송은 범죄입니다. 인물을 재조명한다는 명분은 미군과 국군과 경찰 그리고 고 박진경 대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일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다른 일방을 거짓으로 모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덟째, 방송의 공적책임을 위반했습니다.

위법부당하게 제작된 편파방송이 4·3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국민을 분노하게 했고, 4·3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국민은 왜곡된 인식을 갖게 했습니다.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국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방송의 공적책임을 위반했습니다.

귀 기관이 그릇된 안목에서 벗어나지 않는한 공정성과 균형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편향된 방송에 면죄부를 주는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주4·3 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방송 내용을 분석하여 심의규정 위반사항을 적시하여 제출합니다. 적시한 방송내용이 다수 심의규정을 중복 위반한 사실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재심의하여 진실과 공정을 회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과 규정을 위반한 KBS제주방송국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재조치를 요청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관련규정

가. 방송법

제5조 (방송의 공적책임)

①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 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③방송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 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방송 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⑤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⑦방송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해야 한다. ⑨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 표하는 경우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심의규정)

①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8.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

9.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10.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11.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2.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3. 건전한 소비생활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15.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16.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공익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제100조(제재조치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②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가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방송사업자는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음란, 퇴폐 및 폭력 등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복용·투약·흡입 및 음주 후 방송출연 등으로 인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심의의 기본원칙)

③ 위원회가 이 규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사회통념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① 방송은 국민이 필요로 하고 관심을 갖는 내용을 다룸으로써 공적매체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국민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상파방송의 책임)

① 지상파방송은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 지상파방송은 가족시청시간대에는 가족구성원 모두의 정서와 윤리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방송하여야 한다.

제9조 (공정성)

①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오보정정)

방송은 보도한 내용이 오보로 판명되었거나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다.

제59조(제재조치의 요청 등)

① 위원회는 방송의 내용이 이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기구설치법"이라 한다) 제2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체없이 제재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위반일시
2. 위반사실
3. 제재조치 종류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방송과 유사한 정보의 심의결과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제공자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을 권고받은 정보의 제공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심의규정 위반사항

문상길은 남로당 장교 프락치로서 4·3공산폭동의 주동자 김달삼과 정보교환, 무기공급, 탈출병 추진, 교양자료 배포 등의 문제에 의견일치를 보았고 최후단계에서는 총궐기하여 인민과 더불어 싸우겠다고 약속하고 실행했다.

문상길은 고등군법회의에서 “억울합니다. 내가 전 연대장을 독살만 시켰다면 지금쯤 평양에 가서 최고 영웅훈장을 탔을 터인데, 그걸 못해서 억울합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이 방송에 언급되어야 함에도 남로당(공산당) 입장에서 불리한 내용은 일체 다루지 않았다.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국민을 기만하고 나아가 거짓을 진실로, 진실을 거짓으로 둔갑시키려는 의도가 방송 내내 숨어있다.

* 세부 방송 심의 규정 위반 내용은 붙임 문서에 수록

붙임1

방송통신 심의 규정 위반사항 세부 내용

■ 심의규정 위반 #1 : 4·3 사건의 성격 문제

1. 방송 내용 : 한라산 무장대가 제주도 내 경찰 지서를 습격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른바 4·3 무장봉기다. (진행자)
2. 위반 내용 : 4·3사건의 성격은 무장봉기가 아닌 무장 반란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표현이 정확하지 않으므로 심의규정 14조(객관성) 위반이다.
3. 설명
 - 가. 당시 1947년부터 북한에 사실상의 좌익정부가 수립된 상황에서 UN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가 소련과 북한 측에 의해 거부됨으로써 한반도의 통일정부 수립이 좌절되었다. 이에 유엔은 자유·평등·비밀 선거가 가능한 남한만의 선거를 결정하였다. 이 선거로 우익정부가 수립되면 서울 철도 파업과 대구 폭동을 일으켜 대혼란을 일으킨 남로당(조선공산당의 후신)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 명확하였다. 이에 남로당은 5·10 선거와 우익정부 수립을 저지하기 위하여 1948년 2월 7일을 기하여 폭동을 일으킬 것을 예하 조직에 명령하였다. 그리고 제주도당에게는 2월 중순부터 3월 5일 사이에 폭동을 일으켜 총선거와 미 군정을 반대하고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라는 명령을 문서로 하달하였다.¹⁾ 이는 폭동을 장기적으로 이끌고 가려는 남로당의 전략이었다.
 - 나. 육지에서 폭동이 조기에 진압되자 남로당 중앙당은 2월 중순에 군사부 책임자 이재복을 제주도에 보내어 당시 제주도당 조직부장 김달삼을 어렵게 만나 폭동 지령을 구두로 내렸다.²⁾ 당시 남로당 제주도당은 1월 초순에 조직부 차장 김생민이 체포되고 하순에는 회의를 하다가 2차례에 걸쳐 핵심 당원 22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인 상황이었다.
 - 다. 경찰 체포 시 차에서 뛰어내려 도주한 김달삼은 2월 22일경 신촌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폭동을 제의하였고 연 3일간의 격론 끝에 간부급 19명이 투표하여 12대 7로 폭동을 결정하였다.³⁾ 당시 남로당 측은 자신들의 조직이 노출되어 경찰에 잡혀가느니 일어나 경찰과 싸우자는 분위기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4·3 폭동이 결정된 것이다.
 - 라. 이의 준비과정에서 전라남도에서 파견된 올구(지도원)가 약 보름정도 육지를 다녀와

1)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4·3사건 자료집 제8권」, 183쪽, “주한미 육군 971 방첩 대 격주간 보고서, 1948.2.1.~2.15.”

2) 박갑동, 「박현영」, 인간사, 1983년, 198쪽.; 이선교, 「제주 4·3 진상조사보고서 수정의견, 수정의견 접수책자」, 790~792쪽.

3) 이삼룡(당시 남로당 제주도당 정치위원, 2002년 7월 11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채록) 증언.

서 폭동에 경비대(제9연대)를 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이 지시는 남로당 중앙당의 지시로 보아야 한다. 폭동 시 경비대에게는 경찰력의 중추인 제주 경찰 감찰청과 제주 경찰서를 습격하라는 임무를 부여하고 차량 5대를 할당하였다(병력 200명 동원용).⁴⁾

- 마. 4월 3일에 경비대가 동원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문상길 중위는 중앙당의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변명하였다.⁵⁾ 그러나 경비대가 동원되지 않은 진짜 이유는 4월 3일 당일 제9연대 탄약이 없었기 때문이며 경비대 진압 명령이 내린 뒤인 4월 18일 경에서야 탄약이 보급되었다.⁶⁾
- 바. 무장 집단인 경비대를 동원하여 경찰을 공격하려 했다면 이는 반란이지 폭동이 아니다. 남로당 측은 그 후 1948년 10월 24일에 정부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는가 하면 1948년 9월 9일에 북한 정부가 수립되자 제주도 곳곳에 인공기를 계양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김일성이 남하하면 이에 호응하여 통일을 완수한다는 선전을 하기도 하였다.
- 사. ‘봉기’란 벌집을 건드렸을 때 벌떼가 일제히 하늘로 나는 현상을 말하는 데 남로당 측은 4월 3일 미리 양성한 무장세력인 유격대 420명으로 12개의 지서를 습격하는 한편 우익 인사를 테러하고는 날이 밝아오자 적기가를 부르면서 한라산으로 피신했다. 그 후에도 낮에는 경찰이 마을을 통제하였으나 밤에는 수적으로 우세한 남로당 측이 마을을 통제하면서 우익 인사를 납치하여 살해하였다. 남로당 측은 올빼미처럼 밤에만 주민을 통제했다. 남로당 측에 동조했던 일부 주민들을 제외하고 다수의 주민은 자발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 보았을 때 4·3 사건은 남로당의 통제하에 조직적으로 무력을 사용한 사건이므로 무장봉기보다는 무장 반란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
- 아. 제주 4·3 사건은 정부수립을 저지하고 남로당 조직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계획된 무장 반란이다.

4) 문창송, 「한라산은 알고 있다.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 1995년, 76쪽.;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주 4·3 사건 자료집 12권, 집필자용」, 268~269쪽.

5) 문창송, 위의 책, 76~77쪽.;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의 책, 268~269쪽.

6) 제민일보 4·3 취재반, 「4·3은 말한다 제2권」, 306~307쪽.

■ 심의규정 위반 #2 : 4·3 사건의 발발 원인 문제

1. 방송 내용 : 1947년도에 외부에서 들어온 서북청년단과 응원경찰들의 횡포로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분노가 쌓였던 게 폭발했다. (박찬식)
2. 위반 내용 : 정확한 표현이 아니므로 심의 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이다.
3. 설명
 - 가. 남로당 제주도당은 1948년 2월 22일 무렵의 신촌 회의에서 폭동을 결정했다. 남로당 중앙당의 사정은 유엔에서 선거가 가능한 남한지역에서의 선거가 결정되었으므로 선거로 우익정권이 수립되면 좌익인 남로당은 소멸될 위기에 있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전국적인(제주도 제외) 2·7폭동을 일으켰으나 폭동이 조기에 진압되자 남로당은 당세가 온존한 제주도에서 폭동을 지시했다.
 - 나. 남로당 제주도당 사정은 1월 중에 조직부 차장 김생민이 체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폭동 준비를 위한 회의에 참석했던 핵심 당원 22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됨으로써 조직이 와해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남로당 제주도당은 대책회의를 수차례 하였다. 신촌회의에서 조직부장 김달삼이 경찰을 상대로 한 폭동을 일으키자고 제의하였으며 연 3일간 격론 후 강경파 의견이 다수여서 무장 폭동을 결정하였다.
 - 다. 이즈음 1947년 3·1사건 가담자와 일본과의 민간 무역업자들이 서북청년단이나 경찰에게 시달림을 받기는 하였으나 폭동의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다. 1948년 3월 6일에 3·1사건 가담자인 김용철 군의 경찰에 의한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나는 등 3월 중에 3건의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최초 고문치사 사건인 김용철 군 사건은 신촌 회의 2주 후의 일이었다. 신촌 회의에 참석했던 이삼룡은 이에 대해 “봉기가 결정된 후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니까 우리의 결정이 정당한 것 아니냐는 분위기였다.”고 증언하였다.⁷⁾
 - 라. 제주 4·3 사건을 주도한 김달삼은 “첫째, 조직의 수호와 방어 수단으로써 둘째, 단독 선거·단독정부수립 반대와 구국 투쟁의 방법으로서 경찰에 대한 무장 반격전을 결정하였다.”라고 기록하였다.⁸⁾ 이 내용은 남로당 제주도당 조직의 수호와 방어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 마. 남로당 측은 경찰의 고문치사 사건이 4·3 사건의 원인이라고 선전을 하기도하고 단독 선거·단독정부수립의 저지가 4·3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박찬식 씨는 4·3사건의 발발 원인을 서청과 응원경찰의 횡포와 탄압으로 쌓였던 분노가 폭발한 데서 찾는 것은 왜곡된 평가다. 서청과 경찰의 탄압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은 되었으나 이

7) 이삼룡(일본 동경 거주, 당시 남로당 제주도당 정치위원) 증언(2002년 7월 11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채록)

8) 문창송, 「한라산은 알고 있다.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 1995년, 17쪽.;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주 4·3 사건 자료집 12권, 집필자용」, 226쪽.

것 때문에 4·3 사건이 발발한 것은 아니다.

■ 심의규정 위반 #3 : 김익렬-김달삼 회담 문제

1. 방송 내용

- 가. 당시 9연대의 책임자는 김익렬 중령, 경찰의 초기 진압이 실패하자 그는 사태를 평화적으로 풀 방법을 모색했다. (진행자)
- 나. 군 내부에서는 즉각적인 미 군정당국의 지시에 따른 진압보다는 선무와 진압을 병용하는 그와 같은 전략 전술을 구사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나온 게 김익렬 연대장이 한라산 무장대 지도부를 직접 만나겠다. 소위 말하는 4월 말의 평화협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찬식)
- 다. 1948년 김달삼-김익렬 간 평화 협상이 있었다. 이 협상 결과는 72시간 내 전투 중지, 무장해제, 주모자의 신변 보호였다. (박찬식)
2. 위반 내용 : 김달삼-김익렬 중령의 귀순공작(방송 내용 평화회담)은 미 군정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회담은 실패하였으므로 심의 규정 제9조(공정성) 위반이다.

3. 설명

- 가. 당시 군정장관이 1948년 4월 16일에 경비대를 진압작전에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제주도 군정관 맨스필드 중령에게 대규모 공격에 앞서 소요집단 지도자와 접촉해서 항복할 기회를 주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라는 요지의 명령을 내렸다.⁹⁾ 이 명령에 따라 김익렬-김달삼 회담이 열렸으므로 김익렬의 임무는 소요집단 지도자인 김달삼으로부터 항복을 받아 내는 것이었다.
- 나. 그런데 김익렬 유고에 의하면 김익렬은 김달삼에게 항복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김달삼의 경찰 해체와 폭동 참가자 전원 무죄 처분 요구에 대하여 김익렬은 경찰 개편 및 인원 감축을 합의했고, 폭동시 살인, 방화등 범법자들의 자수나 도망 등을 자유 의사에 맡기며 김달삼 등 지도급 인사들이 일본으로 도피하는데 선박 1척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익렬은 “이는 폭도 전원에 대한 무죄사면이나 다름 없다.”고 스스로 회담이 실패하였음을 인정하였다.¹⁰⁾ 당시 지휘권을 행사했던 미 군정 장관의 지시의 범위를 벗어난 실패한 회담이었다.
- 다. 김익렬-김달삼 회담에 관하여 북한 측은 ①단독선거·단독정부수립 반대, ②경찰 무장해제와 토벌대 철수, ③반동 테러 단체 해산 및 철수, ④피검자 석방 및 불법 선거, 투옥, 학살 중지 등 4개 사항에 합의했다고 기록하였다.¹¹⁾

9)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4·3사건 자료집 제9권」, 25~26쪽, 주한 미 육군사령부, 제주도 작전(1948년.4.18.)

10) 제민일보 4·3 취재반, 「4·3은 말한다 제2권」, 327~329쪽.

11) 박설영, “제주도 인민의 4·3 봉기와 반미 애국투쟁의 강화,” 「북한의 역사와 과학 논문집」, 1991. 129~192쪽.

- 라. 이러한 김달삼의 요구는 당시 상황에서 도저히 합의될 수 없는 무리한 요구였다. 이 미 회담 전부터 양측의 입장 차가 너무 커서 합의될 수 없는 회담이었다. 평화회담 이란 말은 김익렬이 만들어낸 단어다. 그리고 김달삼은 “김익렬은 폭도들의 정당성과 경찰의 불법성을 인정(의견 일치)하고 사건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라고 기록하였다.¹²⁾
- 마. 사실이 이와 같은데도 박찬식 씨는 김익렬-김달삼 간 회담이 지켜졌다면 제주 4·3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었을 것으로 말하였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무기 반납 건도 자진 반납 형식이었으므로 믿을 수가 없는 방식이었고 폭도 전원을 무죄 사면하면 해결이 되기는커녕 제주도 남로당은 사태 악화가 장기화되는 길을 합법적으로 열어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박찬식씨의 발언은 무책임한 발언이다.

12) 문창송, 「한라산은 알고 있다.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 1995년, 78쪽.;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주 4·3 사건 자료집 12권, 집필자용」, 270쪽.

■ 심의규정 위반 #4 : 박진경 대령 암살 동기 문제

1. 방송 내용

- 가. 박대령 암살 동기는 애국 순정에서 나온 민족 정의의 수호에 있다. (진행자)
- 나. 문상길은 (박진경) 암살은 도민을 위한 것이지 남로당의 지령을 받지는 않았다. (진행자)
- 다. 주범으로 지목된 문상길은 김달삼을 만나기는 했으나 암살 지령을 받지는 않았다. (진행자)
- 라. 문상길이 상관을 암살한 이유는 제주도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였다고 저는 봅니다. 문상길은 특히 제주도민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받친 사람으로 역사의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2. 위반 내용 : 박진경 대령 암살은 남로당 중앙당의 지시에 따라 제주도 조선경비대(9연대) 내 남로당 프락치들이 암살 지령을 이행한 것이었다. 따라서 위의 4개 항에 제시된 방송 내용은 진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내용이므로 심의 규정 제9조(공정성), 제14조(객관성) 위반이다.

3. 설명

- 가. 4월 말의 김익렬-김달삼 회담에서 김익렬은 폭도 전원에 대한 무죄 사면을 김달삼에게 약속하였고 폭도들의 정당성과 경찰의 불법성을 인정하였으며 사건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김달삼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그리고 양자 회담 이전에 김익렬-김달삼-오일균 3자 회담을 했는데 이는 상부에 사전 허락이나 사후 보고 없이 비밀리에 진행했다.¹³⁾
- 나. 경비대에게 폭동 진압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비밀리에 폭도 사령관 김달삼을 만난 것은 적장과의 동지 관계였음을 입증하고 있다. 전시에 적장과의 내통으로 여·순 반란 시 제15연대장 최남근 중령이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언도 받아 처형된 사실이 있다.
- 다. 그런데 5월 5일의 딘 군정장관이 임석한 고위급 대책회의에서 김익렬이 경무부장 조병옥과 난투극을 벌려 회의를 망쳐버린 사건으로 김익렬은 당일로 직위 해제되고 후임으로 박진경 중령이 인선되어 다음날인 5월 6일에 부임하였다.¹⁴⁾ 박중령을 바로 뒤따라서 남로당 중앙당에서 올구(지도원)가 모종의 임무를 받고 5월 7일 제주도에 도착하였고 3일 후인 5월 10일에 제주도당 대표로 군책 김달삼과 조직책 김양근 그리고 경비대 프락치 대표 오일균 소령(5연대 2대대장)과 이윤락 중위(9연대 정보과장)의 회합에서 박진경 중령을 숙청하기로 결정하였다.¹⁵⁾

13) 문창송, 「한라산은 알고 있다.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 1995년, 78쪽.;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주 4·3 사건 자료집 12권, 집필자용」, 270쪽.

14) 제민일보 4·3 취재반, 「4·3은 말한다 제2권」, 338~343쪽.

15) 문창송, 「한라산은 알고 있다.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 1995년, 78-79쪽.;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 라. 이런 과정을 볼 때 5월 10일의 4자 회의는 남로당 중앙당 올구(지도원) 지시였고 회의에서 박진경 연대장 숙청을 결정한 것은 올구가 전달한 남로당 중앙당의 뜻으로 보아야 한다. 남로당 중앙당은 김달삼-김익렬 회담에서 김익렬이 제주도당에게 우호적인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김익렬이 갑자기 해임된 것이 상당한 충격을 받고 지도원을 즉시 제주도에 보내어 박진경 연대장 제거를 지시한 것이다. 이러한 4자 회담 결정에 따라서 병력을 지휘하고 있었던 문상길 중위에게 연대장 숙청 임무를 부여한 것이고 문상길은 좌익 병사들을 선발하여 6월 18일 새벽에 연대장 암살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 마. 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진행자는 박대령 암살 동기가 애국 순정에서 나온 민족 정의의 수호에 있다고 영터리로 설명하는가 하면 도민을 위한 것이지 남로당의 지령을 받지 않았다고 진실을 호도했다. 문상길이 김달삼을 만나기는 했으나 암살 지령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행자가 언급했는데 이는 법정에서 문상길이 한 진술이었다. 김달삼이 직접 문상길을 만나 암살 지령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5월 10일 개최된 4자 회담에서 남로당 중앙당 지시에 따라 결정된 연대장 숙청 건은 회의 참석자였던 연대 정보관 이윤락 중위에 의해 회담 직후 문상길 중위에게 전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들 두 사람은 같은 부대에 근무했고 임관 동기(육사3기)로서 친구 사이였으며 둘 다 경비대 내의 남로당 프락치였다.
- 바. 그리고 김종민 씨는 문상길 중위가 제주도민을 살리기 위하여 연대장을 암살하였다고 말하였는데 도민을 살리기 위한 행동이었다면 작전을 개시하기 전에 지휘관을 암살해야지 작전이 끝난 뒤에 암살한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작전 간에 연대장이 도민을 몇 명이나 죽였는지 통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통계도 제시하지 않고 제주도민을 죽였다고 하면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주 4·3 사건 자료집 12권, 집필자용」, 270-271쪽.

■ 심의규정 위반 #5 : 박진경 대령의 학살 명령 및 학살 자행

1. 방송 내용

- 가. 박진경 대령은 천인공노할 야수적 학살을 자행했다. (진행자)
- 나. 박진경 대령은 만행을 하고 학살을 명령했다. 도민을 탄압했다. (김종민, 진행자)
- 다. 명령에 불복하면 무조건 사살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진행자)
- 라. 총칼 앞에 저항할 수 없는 억울한 죽음이 무수했다. (진행자)

2. 위반 내용 : 진실을 왜곡했으므로 심의 규정 제9조(공정성) 위반이다.

3. 설명

- 가. 이 당시 딘 군정장관이 제주도 군정관 겸 59 군정중대장 맨스필드 중령에게 4월 18일에 아래와 같은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를 보면 당시 미군정의 당시 상황에 대한 평가와 관련 조치를 이해할 수 있다.

- 1) 귀관은 제주도의 상황에 정통하라.
- 2) 4월 18일 제주도에 도착한 두 대의 L-5 연락기는 귀관의 지휘하에 있다.
- 3) 한국 국방경비대 추가 병력이 4월 20일 제주도에 도착할 것이다. 도착 시 이 대대도 현재의 다른 한국 경비대와 같이 귀관의 작전통제 하에 놓일 것이다.
- 4) 귀관은 귀관의 배치에 따라 제주도의 폭도들을 진압하고 법과 질서를 회복하는 데 군 부대를 이용하라.
- 5) 대규모의 공격에 임하기 전에 귀관은 소요집단의 지도자와 접촉해서 그들에게 항복할 기회를 주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라.
- 6) 경비대의 작전에 의해 불잡힌 포로들은 경찰에게 인계하지 말라. 그들을 경비대에 위하여 준비되고 보호된 막사에 두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본토로 후송하도록 조치하라.
- 7) 일일 상황보고를 무선통신으로 본부에 보고하라.¹⁶⁾

- 나. 첫째, 1항부터 4항까지의 내용을 보면 제주도의 법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당시 제주도에 배치된 경찰력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라 연락기와 경비대 병력 1개 대대를 추가로 투입하고 있다. 미군과 함께 사태 진압에 나설 대상으로 경비대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5항에 보면 공격 작전에 임하기 전에 소요 집단에 지도자와 접촉하여 항복할 기회(귀순공작)를 주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소위 4월 말 김익렬이 주장하는 평화협상을 추진하는 배경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 다. 셋째는 당시 사태 악화를 우려하여 포로를 보호하기 위해 포로를 경찰에 인계하지 말고 준비되고 보호된 막사에 두고 이른 시일 안에 본토로 후송하라는 내용이다. 이

16) 주한미 미 육군 군정청 일반문서, 제주도 작전, 1948년 4월 18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위원회, 「4·3사건 자료집 제9권」, 25~26쪽.

내용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1년 4월 2일 제주KBS 특집 방송‘암살’의 일관된 내용이 미군정의 모든 조치나 행동을 극악무도한 탄압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미군정은 남로당 무장대의 극악무도한 상해와 테러, 그리고 치안병력들의 보복적인 폭력 행위 모두 반대하였다. 또 귀순공작(김익렬이 주장하는 평화협상)은 물론 포로들에 대한 보호도 지시했었다.

- 라. 미군 문서를 종합해 볼 때, 미군정은 1948년 4월 3일 이후 남로당 무장대에 의한 사태 악화로 인해 국방경비대를 투입하여 진압방침을 세웠으며, 극악무도한 진압 작전이 아닌 포로들을 보호하고 또 가능했었다면 무장대를 귀순시켜 큰 충돌 없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했었다.¹⁷⁾ 그리고 이러한 단계별 작전이 성과가 없을 때는 당시 사태의 안정을 위해 남로당 무장대에 대한 토벌작전을 한다는 것이었다.
- 마. 이러한 상황에서 박진경 대령의 학살 명령이란 불가능 하다. 박진경 대령은 명령을 내린 적도 없었고 주민학살을 한 적도 없었다. 더구나 야수적 학살을 하였다고 방송에서 언급한 것은 명백한 모함이고 왜곡이고 명예훼손이다. 명령에 불복하면 무조건 사살하라고 명령을 내린 사실이 없으며 이는 암살범들의 주장이다.
- 바. 작전을 총괄 지휘한 브라운 대령은 5월22일의 명령에서 경찰이 주민들을 고문하는 등 거칠게 다루었다는 것을 알고 경찰과 경비대에게 체포된 포로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심문할 심문센터를 설립하라고 지시했다.¹⁸⁾ 경찰에게는 해안을 담당하여 주민들 테러하고 살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지시했고 상기 명령은 경찰이 주민들을 테러, 고문, 살해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지시하면서 포로 심문센터 설치를 지시한 내용인데 포로를 직접 심문하는 심문팀에는 미군, 한국군, 한국 경찰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합동심문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당시 여러 모든 여건을 못 갖춘 상황에서도 제도적으로 고문, 치사,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 사. 작전은 브라운 대령이 총괄했는데, 총사령관 명령 없이 경비대 작전 부대장이 학살 명령을 내릴 수도 없고 학살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 그런 명령을 내렸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고 학살을 하였다면 경비대가 몇일 날 어디서 몇 명을 학살했는지 그 희생자 명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아. 미군 보고서에는 경비대가 2차 작전 간에 53명을 포로로 잡았는데 포로 중 4명이 탈주를 하여 사살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¹⁹⁾ 이와 같이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재판정에서 암살범들이 자기 변명조로 말하는 것을 진실인양 믿고 막연히 박 대령이 천인공노할 야수적 학살을 자행했다고 또는 도민을 탄압했다고 말하면 이는 허위사실 유포이고 모함이다. 발언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심문팀과 대화하는 박진경 대령

17) 나종삼, 『제주 4·3 사건의 진상』, 2013년, 서울: 아성사, 141쪽.

18) 주한미군 미 육군 군정청, 브라운 보고서. 1948.7.17.

19) 주한 미 육군사령부 일일정보 보고서 1948.6.18.



제일 좌측 국방경비대 범죄수사팀 심문요원, 좌측 두 번째 미군 측 심문요원, 중앙이 박진경 대령, 검정 제복에 모자를 착용한 자는 경찰 심문 요원

■ 심의규정 위반 #6 : 작전간 무조건 여행, 체포, 고문 문제

1. 방송 내용

- 가. 군경 토벌대에 6,000여 명이 끌려가서 고문을 받았다. (진행자)
- 나. 폭도가 출현한 지역의 주민들을 무조건 여행해 갔다. 무차별 토벌에서 살아오면 다 행이었다. (당시 한 중학생이 소지했던 석방증명서 소개) (진행자)
- 다. 닥치는 대로 청년들을 잡아 죽이고, 잡아들여서 고문을 하고, 어린이도 막 죽이고. (김종민)

2. 위반 내용 : 내용이 객관적이지 않고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 따라서 심의 규정 제14조 (객관성) 위반이다.

3. 설명

- 가. 브라운 대령은 5월 22일 합동심문센터 설치를 지시한 것 외에도 1948년 6월 2일의 기자회견에서 경찰에게는 일주도로에서 한라산 쪽으로 4km까지의 인구가 많은 해안지역을 담당하고 조선경비대는 경찰이 담당하지 않은 산악지역을 담당하여 서쪽에서 동쪽으로 수색하며 해안경비대는 하루에 두 번씩 해안을 순회하도록 임무를 분담시켰다고 언급함으로써 1948년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실시된 1차 작전의 개념을 밝혔다.
- 나. 그리고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된 제2차 작전에서 조선경비대는 제주도를 4개 방향에서 산 정상쪽으로 수색하였다. 미 육군사령부 정치 고문관 제이콥스(Joseph E. Jacobs)는 6월 15일 제주도를 방문하고 16일자의 보고서에서 “진압작전에서 약 3,000명이 체포됐고 심사를 받았다. 현재 여성 2명을 포함하여 575명이 제주도의 포로수용소에 있으며 4개 심문팀의 심사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²⁰⁾ 제이콥스 고문이 제주도를 방문한 6월 15일은 2차 작전(1948.6.14.~6.17)의 두 번째 날이므로 체포된 사람 3,000명은 작전이 시작된 5월 30일부터 누적된 숫자이다. 따라서 그동안 2,425명가량이 심사를 끝내고 무혐의로 석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다. 미군 보고서에는 1차 작전기간 동안 경비대가 의심되는 50대까지의 청장년을 방첩대에 인계하라고 해서 학교에 나와 있는 방첩대에 인계만 하였다는 증언이 있다.²¹⁾ 그리고 경비대는 1차 작전 간 596명을 심문센터에 인계했는데 6월 2일까지 427명을 심사 후 석방하였고²²⁾ 2차 작전 시에는 게릴라 생포 53명, 사살 4명이라는 기록이 나온다.²³⁾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경비대가 1,2차 작전간 인민유격대 포로 및 민간인 650여명을 심문센터에 인계하였으므로 나머지 2,350여명은 경찰 측에서 심문센터에 인계하였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20) 주한 미 육군 민간인 고문관 Joseph E. Jacobs, 「제주도에서의 소요사태」, 1948.7.2.

21) 당시 9연대 1대대 2중대 소대장 조연표(육사 4기) 증언(2001.10.15. 채록)

22) 주한 미육군사령부 일일정보보고서, 1948.6.4.

23) 주한 미육군사령부 일일정보보고서, 1948.6.4.

- 라. 사실 관계가 이러함에도 방송에서 박진경 연대장이 청년들 6,000여 명을 무조건 끌고 가서 고문을 하였거나 죽였다고 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심각한 사실왜곡이다. 위반#4에서도 밝혔거니와 합동심문센터에서는 심문팀에 미군과 한국군 및 경찰 등이 혼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심문시 구타나 고문들 할 수 없는 구조인데도 방송에서는 막 고문하고 죽이고 했다고 했다. 또 연대장을 암살한 암살범들이 법정에서 한 말을 그대로 언급하며 연대장이 어린이도 막 죽였다고 언급하는 등 방송은 심각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 마. 한 중학생이 소지하고 있던 석방 증명서에는 '1948년 6월 23일 미국인과 조선인이 합동 취조후 석방함'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러니까 이 중학생은 제이콥스 정치고문이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는 심사 중이었던 575명 중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후 석방된 사람들 중 한 사람이다.²⁴⁾ 합동심문센터에서 심사한 3,000여 명 중 일부는 산간마을 사람들이나 일부는 해안마을에서 살다가 5.10. 선거 시 선거 방해목적으로 남로당 유격대들에 의해 강제 입산을 당하였다가 경비대 작전이 이행될 때까지 20여 일 이상 하산하지 않았던 사람들로 보인다.
- 사. 브라운 대령은 6월 2일 기자회견 시 "작전의 목적은 백성들이 산중으로부터 내려와서 안전하게 하곡을 수확하고 새 곡식을 심도록 하기 위함이요, 약 20여 명가량으로 보이는 산중의 두령들을 체포하는데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²⁵⁾ 이는 입산 되었던 주민들이 심문센터로 연행되었음을 의미한다.
- 아. 당시 작전에 참가하였던 채명신도 아래와 같이 증언했다.

한쪽에서는 박진경 대령이 양민을 학살했다고 하는데, 그는 양민을 학살한 게 아니라 죽음에서 구출하려고 했습니다. 4·3초기에 경찰이 처리를 잘 못해서 많은 주민이 입산했습니다. 그런데 박 대령은 폭도들의 토벌보다는 입산한 주민들의 하산에 작전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민간인 보호작전은 인도적이면서 전략적 차원의 행동입니다....(중략). 그는 주민들을 선무공작으로 입산무장대로부터 분리하게 시키는 데에 주력했습니다. 유격전에서 유격대와 주민은 물과 물고기 관계입니다. 이는 모택동의 이론입니다. 따라서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므로 유격대를 섬멸하려면 우선 주민들을 유격대와 분리시켜야 합니다.²⁶⁾

자. 남로당 인민유격대는 1948년 4월 3일 미리 양성한 유격대 420명으로 12개의 지서를

24) 제이콥스 고문관의 16일자의 보고서에 '575명이 제주도의 포로수용소에 있으며 4개 심문팀의 심사를 받고 있다.'고 되어 있다. 주한 미 육군 민간이 고문관 Joseph E. Jacobs, 「제주도에서의 Disturbance」, 1948.7.2

25) 현대일보 1948.6.3.

26) 蔡命新(75세, 서울시 종로구 후암동, 당시 9연대 소대장, 2001. 4. 17 채록) 증언;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약칭 정부보고서)」, 21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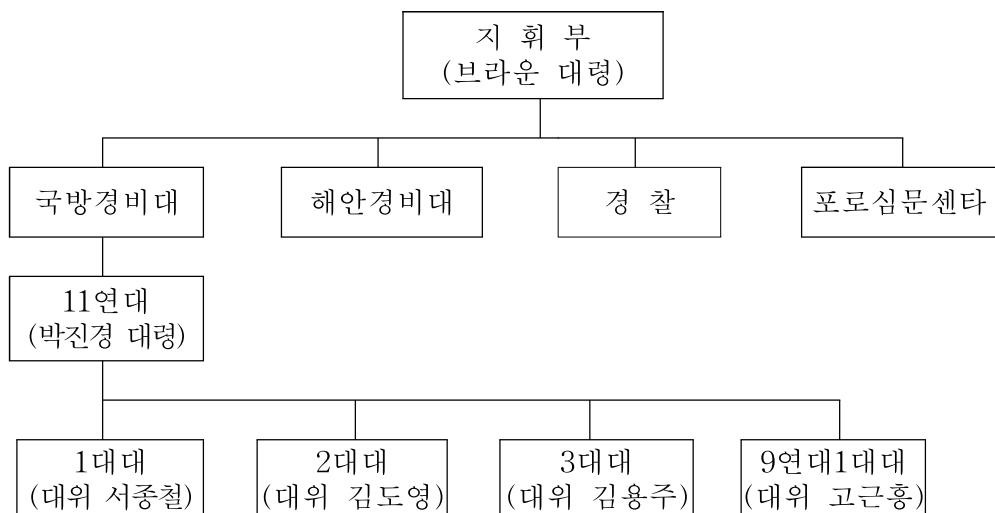
습격하고 다수의 우익 인사를 희생시켰다. 당시는 이를 진압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미군정의 남로당 인민유격대에 대한 대게릴라 작전이 개시되는 상황이었다. 대게릴라작전에서 적성지역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적과의 연관성 여부를 유관 기관이 합동으로 심문하는 것은 작전의 기본이다. 이러한 것을 무조건 연행해서 고문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당시 불가피했던 정당한 군 작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얼토당토 없는 심각한 왜곡이다. 군 작전을 이해 못하는 무지의 소치다.

■ 심의규정 위반 #7 : 박진경 연대장이 작전 주도설

1. 방송 내용 : 작전은 박진경 대령이 직접 주도했다. (진행자)
2. 위반 내용 : 사실 왜곡으로 심의 규정 제9조(공정성) 위반이다.
3. 설명

- 가. 1948년 5월 30일부터 6월 17일까지의 제주도 진압작전을 주도한 사람은 브라운 대령이다. 박진경 대령은 브라운 대령의 명령을 받아 작전을 수행한 국방경비대 11연대장이다. 브라운 대령이 국방경비대, 해상 경비대, 경찰을 지휘했다는 기록²⁷⁾과 심문센터를 설치하라고 지시한 기록이 나온다.²⁸⁾
- 나. 국방경비대는 4개 대대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11연대의 3개 대대와 제9연대 1개 대대이다.²⁹⁾ 박진경 중령은 5월 6일부로 제9연대장에 보직되었다가 10여 일후인 5월 15일부로 5월 1일에 창설되어 제주도에 투입된 제11연대 연대장으로 전보 발령이 났다.³⁰⁾ 따라서 제9연대는 연대본부가 해체되어 제11연대에 흡수되면서 제1대대만 남게 되었다. 제9연대는 2,3 대대가 창설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남로당 인민유격대에 대한 진압작전 시의 박진경 중령 직책은 제11연대장이다. 당시의 지휘체계를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진압부대 편성 및 지휘체계



27) 현대일보 1948.6.3.

28) 주한미 육군 군정청, 브라운 보고서, 1948.7.17.

29) 주한 미 육군 민간인 고문관 Joseph E. Jacobs, 「제주도에서의 소요사태」, 1948.7.2.

30) 육군본부 군사감찰, 「육군역사일지 제1집」, 1948.5.15.

■ 심의규정 위반 #8 : 제 9연대 탈영 사건

1. 방송 내용 : 박진경 연대장의 가혹한 토벌작전이 계속되자 9연대 내부에서 반발이 일었다. 일부 군인들이 탈영한 것도 그 즈음의 일이었다. (진행자)
2. 위반 내용 : 사실 왜곡으로 심의 규정 제9조(공정성) 위반이다.
3. 설명
 - 가. 1948년 5월 20일 제9연대 제1대대에서 사명 41명이 총기와 탄약 및 차량 1대를 가지고 집단 탈영했는데, 이는 진압작전이 시작되기 10일 전의 일이고 문상길 중위의 지시로 탈영한 것이다. 김달삼이 작성한 문건인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에도 문소위(문상길 중위)의 지시로 탈영했다고 기록되어 있다.³¹⁾
 - 나. 이 탈영 사건은 사전에 인민유격대 사령관 김달삼과 합의가 되어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4월 20일 김달삼-문상길 회담과 5월 10일 남로당 측의 김달삼, 김양근과 경비대 프락치 오일균, 이윤락 등 4자 회담에서 경비대의 탈출병을 적극 추진토록 합의되어 있었다.³²⁾ 이 것을 5월 20일 문상길이 실행한 것이다.
 - 다. 위에서도 언급 되었지만 당시 박진경 중령은 5월 6일부로 제9연대장에 보직되었다가 10여 일후인 5월 15일부로 5월 1일에 창설되어 제주도에 투입된 제11연대 연대장으로 전보 발령이 났다. 그리고 1차 작전은 5월 30일이 되어서야 개시되었다. 연대장 부임, 11연대와 기존 제주도 9연대의 통폐합 및 참모진 편성 등으로 분주했었다. 가혹한 토벌작전이 계속되었다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31) 문창송, 「한라산은 알고 있다.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 1995년, 81쪽.;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주 4·3 사건 자료집 12권, 집필자용」, 271쪽.

32) 문창송, 「한라산은 알고 있다.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 1995년, 78-8쪽.;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주 4·3 사건 자료집 12권, 집필자용」, 270쪽.

■ 심의규정 위반 #9 : 6.23 재선거 문제

1. 방송 내용 : 미군은 빨리 강경 진압을 해서 선거를 무사히 치르는 것만이 자신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했다. (김종민)
2. 위반 내용 : 이 발언은 부정확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므로 심의 규정 14조(객관성) 위반이다.
3. 설명
 - 가. 브라운 대령은 6월 2일의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작전 목적은 백성들이 산중으로부터 내려와서 안전하게 하곡을 수매하고 새 곡식을 심도록 하기 위함이고 약 20명가량으로 보이는 산중의 두령들을 체포하는 데 있다. 이러한 결과는 5.10 선거 때에는 성적이 좋지 못했는데 백성들을 보호함으로써 6월 23일의 재선거 시에는 자유롭게 자기네 대표를 선출하게 될 것이다. 여하간 사태는 6월 23일까지는 진정될 것이다. (후략)”³³⁾ 라고 말한 바 있다.
 - 나. 이는 진압 작전으로 남로당 유격대 간부들을 체포하고 산중에 있는 주민들을 하산시킴으로써 질서가 회복되면 5월 10일 선거는 성적이 좋지 못했으나(3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에서 투표율 50% 미만으로 선거 무효) 6월 23일에 실시되는 재선거는 무사히 치러질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6.23 재선거는 제주도 선거관리 위원회의 연기 요청을 미군정이 받아들임으로써 결국 다음 해인 1949년 5월 10일에 치러진다.
 - 다. 김종민 씨는 앞뒤로 상황설명을 거두절미하고 미군은 강경 진압으로 선거를 무사히 치르는 것만이 자신들의 임무라고 단정을 지음으로써 자의적 해석을 하였다. 질서가 회복되면 선거가 무사히 치러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 라. 그리고 강경 진압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무엇이 강경 진압인가? 폭동과 반란을 일으킨 자들의 거점인 산악지역을 통제하고 폭도들이 저항하면 이를 소탕하는 것이 경비대의 임무이다. 이러한 작전을 무슨 크게 잘못한 것인 양 방송에서 거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 마. 김종민 씨는 자신의 발언에서 6.23.재선거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청취자에게 5.10. 선거로 오인하도록 하였다. KBS라는 공영방송에서 청취자가 사실을 오인토록 하는 방송은 지양되어야 한다.

33) 현대일보, 1948.6.3.

■ 심의규정 위반 #10 : 9연대장 박진경 대령 인선 문제

1. 방송 내용 : 박진경 대령을 선택했을 때는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제주도로 파견했던 것이다. (진행자)
2. 위반 내용 : 이 발언은 부정확하고 왜곡되어 있으므로 심의 규정 14조(객관성) 위반이다.
3. 설명
 - 가. 1948년 5월 5일 오후 딘 군정장관 주재 하에 열린 고위급 대책회의에서 경무부장 조병옥과 난투극을 벌인 9연대장 김익렬 중령을 보직해임하고 후임 연대장 인선에 대한 논의가 통위부에서 있었다. 이때 경비대 총사령부 작전처장 장창국 중령과 인사처장 박진경 중령 등이 적임자로 천거되었다.
 - 나. 장창국 중령은 제주도에서 제9연대를 창설했던 경력이 있었고 박진경 중령은 일제 때 제주도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둘 다 제주도와 인연이 있었다. 둘 다 아직 연대장 근무 경험은 없었다.
 - 다. 그런데 이 논의 자리에서 통위부 참모총장 이형근 대령이 작전처장 장충국 중령은 중앙에서 근무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고, 인사처장 박진경 중령에 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 그리고 미군 측에서도 박중령을 천거했으므로 박중령으로 결정되었다.
 - 라. 물론 내부적으로 미군 측에서는 장창국 보다는 박진경을 선호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를 공개적으로 미군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인 박진경을 지명했다고 발언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다. 박진경 대령은 정상적인 인선과정을 거쳐서 제주도로 가게 된 것 이었다.

■ 심의규정 위반 #11 : 오라리 방화사건

1. 방송 내용 : 오라리 방화사건은 무장대를 강경 진압하는 명분이 되었다. (진행자)
2. 위반 내용 : 이 발언은 부정확하고 왜곡되어 있으므로 심의 규정 14조(객관성) 위반이다.
3. 설명

- 가. 오라리 방화사건은 5월 1일 May Day 날에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은 우연히 발생하였으며 공교롭게도 김익렬-김달삼 단독회담과 김익렬이 보직 해임되는 월이이 되는 5월 5일의 고위급 대책회의 중간에 발생하므로 써 강경 진압의 명분이 되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 나. 그러나 사건을 염밀히 들여다보면 오라리 사건은 우연히 두 사건의 중간에 발생했을 뿐이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토벌작전 방침이 변한 것은 없다. 딘 군정장관은 경찰력만으로는 남로당 유격대를 제압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4월 16일에 제주도 폭동 진압 작전에 경비대를 투입하라고 명령을 내렸다.³⁴⁾ 그러므로 오라리 사건이 남로당 유격대를 강경 진압하는 명분을 제공하였다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4) 주한미 미 육군 군정청 일반문서, 제주도 작전, 1948년 4월 18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4·3사건 자료집 제9권」, 25~26쪽.

붙임2

시민의견 - 1

방송내용	수정위반사항
<p>나래이션 : ”박대령은 천인공노할 야수적 학살을 자행했다“ ”암살동기는 애국순정에서 나온 민족정의의 수호에 있다“</p>	<p>나래이션은 엄정 공정 객관성있게 박진경대령을 평가하고 방송했어야 하는데 천인공노할 야수적 학살을 자행했다하는데 남로당인민유격대 진압토벌작전이 분노를 참을 수 없을 만큼 증오스럽고 도저히 용납 할 수 없었던가?</p> <p>암살동기는 문상길 이하 남로당프락치군인들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데 일조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p>
<p>양정심 : 새로운 세상을 지금 꿈꾸는 사람들 의 열망은 있지만 그 열망은 미군정과 국방 경비대의 변화, 탄압 때문에 많은 평범한 제주도민을 죽음으로 몰아내는 단계고 이 죽음으로 몰아내는 단계를 조금이나마 막고자 한 다면 수장을 제거해야만 하는 거잖아요</p>	<p>제주4·3평화재단 양정심 실장의 의견은 남조선노동당입장에서 본 100% 견해이다.</p>
<p>나래이션 : 1948년 5월 1일 미군 촬영반이 오라리 민가 방화사건을 항공에서 촬영하였다. 미군정은 그 긴박한 순간을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으로 촬영했다. 방화범은 우익청년단으로 밝혀졌지만 영상은 마치 준비된 것처럼 촬영되어 있었다. 미군정은 무슨 의도로 이 영상을 촬영한 것일까?</p> <p>역사학자 박찬식 : 미군이 비행기 띠우고 촬영까지 하면서 5월 1일에 마치 한라산 무장대가 마을 방화를 한 듯이 그렇게 꾸며낸 조작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생각을 더 해볼게 5월 1일에 메이데이 필름이 나오잖아요? 그날 이미 한라산 무장대에 대</p>	<p>제주4·3연구하는 진보좌파 양조훈이하들은 미군 촬영반이 오라리 민가 방화사건을 항공에서 촬영한 것을 계획적으로 촬영했다고 주장은 하지만 이것은 미군들이 기록으로 촬영한다는 것이 오라리 방화사건을 생각지도 않게 촬영하게 된 것이다. 준비된 것은 절대로 아니다. 증거는 그 영상물에서 나온 여인들이 필름을 오라리 연미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니 모두들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증언을 하였다.</p> <p>박찬식은 조금 옳게 보고 있어요. 5월 1일의 메이데이 필름은 조작된 필름이라기보다는 한라산 무장대에 대한 전면 공격을 하고 있다는 일종의 홍보, 과시용 필름이라고</p>

<p>한 전면 공격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5월 1일의 메이데이 필름은 조작된 필름이라기보다는 한라산 무장대에 대한 전면 공격을 하고 있다는 일종의 홍보, 과시용 필름이라고 볼 수 있죠</p>	
<p>나래이션 : 오라리 방화사건은 무장대를 강경진압하는 명분이 되었다.</p>	<p>오라리 방화사건은 제주4·3사건에서 각 마을에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사건이다. 오라리 방화사건은 4월 29일 남로당마을자위대들에 의해 오라리 대동청년단장 박두인과 부단장 고석종은 마을자위대 아지트인 민오름에 끌려가서 행방불명이 되고 그 다음날 대동청년단원 부인 강공부, 임갑생이가 또 민오름 정상에 납치되어가 강공부는 총으로 맞아 죽고 임갑생은 탈출하였다. 5월 1일날 강공부 장례식을 마치고 대동청년단, 서북청년단들이 남로당연미마을자위대원 5세대 집에 불태우는 일이 벌어지자 이때 민오름 주변에 있었던 마을자위대원들이 내려와 추적을 하자 우익청년들은 사라지고 신고를 받은 경찰들은 연미마을에 진입하여 경찰관 어머니와 마을 주민 1명이 희생을 당하였다.</p> <p>남로당인민유격대와 자위대원들을 강경진압하는 명분은 남로남로당인민유격대와 자위대원들 남로당측이 제공하였다.</p>
<p>나래이션 : 한라산 무장대가 제주도내 경찰지서를 습격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른바 4·3 무장봉기다. 무장대는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의 산하조직이다. 봉기의 주된 명분은 5.10 단독선거 반대였다.</p> <p>6000여명이 끌려가서 고문을 받았고 박진경 연대장이 학살명령했다. 도민을 탄압했고 다죽이려했기에 암살했다</p>	<p>-한라산 무장대가 아니라 남로당제주도당인민유격대(자위대포함) 경찰지서 12개 습격한 4·3폭동이다. 봉기가 아니라 폭동이다.</p> <p>-6,000여명이 끌려가서 고문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다. 또 박진경연대장이 학살명령했다고 하는 기록도 없다. 제11연대 제1차작전중 작전지역의 중산간 마을의 50세까지의 청·장년들을 연행하여 신문팀에 인계한 것 뿐이다.</p> <p>신문팀도 경찰, 군인, 미군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신문팀에서 남로당 가입과 살인·방화·약탈 가담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했을 뿐이다.</p>
<p>박진경 연대장 강경진압 토벌작전으로 제9연대 군인들 반발로 탈영했다</p>	<p>이것은 완전 왜곡과 날조이다.</p> <p>제11연대장 박진경의 강경진압토벌작전으로 제9연대 프락치군인들이 탈영한 것이 아니라</p>

	<p><u>1948년 4월 20일 제5연대 1개대대가 토벌을 위해 제주에 오자 제9연대 남로당장교프락치 문상길은 남로당군사총책 김달삼에게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긴급 연락하여 들은 “인민군 원조 부대로서의 탈출병 추진” 등을 논의했으며</u></p> <p><u>1948년 5월 10일 제주읍에서 남로당제주도당 군책 김달삼, 조직책 김양근. 국방경비대 5연대 오일군대대장, 부관 나희필, 제9연대 정보관 이윤락중위 등 5명이 회담하여 ‘최대의 힘을 다하여 상호간의 정보 교환과 무기 공급 그리고 가능한 한 도내에 있어서의 탈출병을 적극 추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고 밀담하였다.</u></p>
문상길이 암살은 도민을 위한 것이지 남로당 상부로부터 지령을 받지는 않았다.	<p>-남로당 장교프락치 문상길은 4·3 사건발발 당시 국방경비대 동원을 저지하여 인민유격대에 의한 제주읍 장악을 실패하게 하였던 책임이 있어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측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었다.</p> <p>- 문상길 중위는 법정진술에서 김익렬 전 연대장의 방침에 찬동했기 때문에 김익렬 중령과의 회견을 추진키 위해 처음 김달삼을 만났고, 두 번째는 박 대령 부임 후로 “김달삼이 30만 도민을 위하여 박 대령을 살해했으면 좋겠다고 하였을 뿐 절대 지령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상길은 김달삼이 ‘박 연대장을 살해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여 진술하므로서 ‘김달삼 지령설’을 인정한 것이다.</p>
나래이션 : 미소의 입장이 달라서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넘겼다. 유엔은 한반도의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48년 1월 8일 유엔 한국임시위원회단이 내한했다. 인구비례에의한 남북총선거를 소련과 북한이 거부하면서 48년 2월 26일 유엔임시총회에서 유엔한국위원회단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단독선거를 실시하자는 미국안이 채택되었다.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명백해졌다. 그것은 단독정부 수립을 뜻하기도 했으며 분단이 고착화되는 것을 의미했다. 미소 냉전체제에서 단선의 성공은 미군	<p><u>제주에서 단선·단정을 반대하며 4·3무장봉기가 벌어진 것은 남로당제주도위원회는 단선·단정 반대 구국투쟁을 위하여 한다고 했지만 그 구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자는 것이다.</u></p>

<p>정의 최대과제였다. 그러나 제주에서 단선단정을 반대하며 4·3무장봉기가 벌어진 것이다.</p>	
<p>역사학자 박찬식 : 1948년 4월 말 남로당 무장대 총책 김달삼과 9연대장 김익렬 중령이 평화협상을 성사시켰다.</p>	
<p>평화협상 합의 내용 : 72시간 내 전투중지, 무장해제 및 주모자들의 하산이 이루어지면 주모자들의 신병을 보호한다는 것이었다.</p>	<p style="color: red;">평화협상이 아니라 귀순협상이다. 평화협상은 김익렬이가 지어낸 단어이다.</p>
<p>미군정 당국이 애당초 이 협상에 기대를 갖지 않았다. 강경진압으로 계속 일관하면서 오히려 한라산 무장대의 아지트를 확인하는 정도로 협상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p>	
<p>나래이션 : 작전은 9연대 박진경 연대장이 직접 주도했다. 그의 강경 토벌작전은 전방 위적으로 펼쳐졌다. 양민과 폭도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폭도가 출현한 지역의 주민들을 무조건 연행해갔다. 무차별적 토벌에 살아돌아오면 다행이었다. 당시 수용소에 수용됐다 석방됐던 한 중학생의 석방 증명서다. 당시 오현중학교 2학년 현용준의 석방 증명서 ‘증명서, 아래의 인물은 1948년 6월 23일 미국인과 조선인이 합동 취조 후 석방 함. 어린 학생이 무슨 죄가 있어 군화밭에 짓밟혀야 했을까’</p>	<p style="color: red;">주한 미 육군 군정청, 제주도에서의 브라운 보고서, 1948년 7월 17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과 경비대에 체포된 포로를 심문할 <u>심문센터</u>를 설립하라. 심문센터에서 획득한 정보는 범죄자의 재판에 이용되거나 폭동 참가자들을 체포하는 데 이용된다 - 오현중 현용준의 석방증은 작전지역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석방증명서이었다. - 작전기간중에 오름이나 계곡에 있는 사람들은 5·10총선거 반대 주민들과 인민유격대 가족들이 있어서 이들도 포로심문센터에 연행되었으며 심문을 거쳐 인민유격대에 협력한 용의점이 없으면 석방했으며 - 제11연대는 작전간에 의심되는 중산간에 있는 50세까지의 청·장년(마을자위대·민애청·부녀동맹 가입협의)들을 연행하여 심문센터에 인계하였다. - 브라운 대령은 포로와 의심되는 주민들의 심사를 위하여 제주도에 학교(제주농업중학교) 등 수용 공간이 넓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4개 심문센터를 설치·운영하였다. - 각 심문센터에 경찰, 군, 미군 등을 배치하였다. 센터에서는 남로당 가입과 테러활동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였다. - 미육군사령부 정치고문 조셉 제이콥스는 6월 15일 제주도의 브라운 대령 지휘소를 방문하고 16일자의 보고서 2차 작전에 관하여 3,000명이 체포됐고 심사를 받았다고 하며 현재 여성 2명을 포함해 575명이 제주의 포로수용소에 있
<p>김종민 4·3전문위원 : 정말 닥치는대로 청년들을 잡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잡아들여서 고문을 하고 어린 아이도 막 죽이고 연대장이 학살명령을 했다.</p>	
<p>나래이션 : 박진경 연대장이 부임한지 한달 여동안 군경 토벌대에 끌려간 사람은 약 6천</p>	

<p>여명에 달한다. 당시 무장대 수는 불과 500여명이었다. 명령에 불복하면 무조건 사살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총칼앞에 저항할 수 없는 억울한 죽음들이 무수했다.</p>	<p>으며 4개 심문팀의 심사를 받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p> <p>*김종민이가 말한 닥치는데로 청년들을 잡아들이고 고문을 하고 어린 아이도 막 죽이고 박진경연대장이 학살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p>
<p>박진경 연대장의 가혹한 토벌작전이 계속되자 9연대 내부에서 반발이 일었다. 일부 군인들이 탈영을 한 것도 그즈음의 일이었다.</p>	
<p>나레이션 : 박진경 연대장의 강경진압 방침은 김익렬 회고록에서 확인이 된다. 그는 9연대장 취임식 자리에서 제주폭동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고 밝혔다.</p>	<p>박진경 연대장 강경진압이라고 “제주폭동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하는 것은 유일하게 김익렬유고록에만 나온다. 기고문에는 없다.</p>
<p>김창후 전 제주4·3연구소소장 : 해안 마을 중에서도 외도, 삼양, 화북 여기는 강력한 경찰서 지서가 있었어요 지서가 있는데, 지서가 있어서 계속 그 경찰들한테 탄압을 받고 고충을 당하는데 그러면 내가 5월 9일에 투표를 거부하기 위해서 산에 도망갔다가 내려오면 이 경찰들이 나를 가만히 둘 건가? 이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도 외도 사람들, 삼양 사람들, 화북 사람들 투표 안 하려고 5월 9일에 대거 산으로 가버렸어요</p>	<p>김창후 전 제주4·3연구소소장의 말이 마을의 지서가 있는데도 외도 사람들, 삼양 사람들, 화북 사람들 투표 안 하려고 5월 9일에 대거 산으로 가버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당시 5·10총선거 당시에는 각 마을은 남로당인민위원회가 접수하여 무정부상태이었다. 구장(리장)은 있으나마나이었다. 마을 인민위원회 마을 반장등을 통하여 돈, 옷감, 미싱, 쌀, 된장, 간장, 반찬부식들을 남로당인민유격대가 있는 산으로 올려 보낼 정도로 실질적으로 마을에 행사하였다. 인민위원회 말을 듣지 않을수가 없었다.</p>
<p>나레이션 : 선거를 앞두고 5.10선거를 거부해 산으로 가버린 사람들, 조국의 분단을 원치않아 입산한 사람들과 무장대의 강요로 투표를 거부한 사람도 많았다. 왜 제주는 미군정이 치르는 단독선거에 이토록 반감이 컸을까</p>	<p>-나레이션에 선거를 앞두고 5.10선거를 거부해 산으로 가버린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는데 남로당이 선거를 못하도록 한것이고,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보복(방화, 습격, 살인 등)을 하였다.</p>
<p>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 무엇보다도 일제 관리를 그대로 등용하잖아요? 일제 강점기에 이 한반도의 치안을 담당했던 것은 경찰이잖아요 친일경찰인거죠 식량 문제</p>	<p>-해방이후 미 군정에서는 일제 관리를 등용할 수 밖에 없었다. -경찰도 마찬가지이다. 치안유지를 위해서 -양정심은 미군정이 일제시 경찰 등 친일인사를 채용하였고, 관리들이 부패해서 식량문제, 경제</p>

<p>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친일지배가 여전히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당시의 평범한 사람들도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p> <p>나래이션 : 해방은 또 다른 점령의 시작이었다. 제주에서 미군정보다 여운형등 선각자들이 뿌리를 둔 제주인민위원회의 영향력이 더 컸다. 체제유지의 어려움을 느낀 미군정은 요직마다 친일경찰을 그대로 등용했다. 그러나 흉년과 역병에 미곡정책마저 실패로 돌아갔다. 가난과 굶주림이 계속되었다.</p> <p>(양과자는 독약이다 등 미군 반대시위 현수막을 보여줌)</p>	<p>적인 어려움을 주장하는데, 이는 제주도만의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전국적인 상황이었고 이점을 가지고 제주도에서 미군정이 실패했다고만 주장 할수 없다.</p> <p>-제주도인민위원회는 남로당의 통제하에 있었다.</p> <p>-미곡정책 실패는 전국적인 상황이었다.</p>
<p>박찬식 : 47년도에 외부에서 들어온 서북청년단과 응원경찰들의 횡포로 계속 억눌려서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분노가 쌓였던 게 폭발했다.</p>	<p>-박찬식은 왜곡하고 있다. 1947년도에 제주는 치안부재이었다. 남로당제주도위원회 3·1운동 기념 투쟁 방침을 각 읍·면과 직장세포에 시달할 정도로 남로당이 마을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제주4·3폭동이 없었다면 서북청년단들과 응원경찰들은 제주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p>
<p>나래이션 : 미군정은 1947년 3.1절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없이 좌익의 폭동으로 규정했다. 파업주모자의 검거에만 몰두했다. 매질과 고문으로 제주청년들이 죽어나갔다. 미군정을 향한 억압과 울분속에서 고립된 작은 섬은 그렇게 점차 탄압의 대상이 되어갔다.</p> <p>박찬식 : 미군정 당국은 이미 4월 3일 무장봉기 이후부터 그 이전 3.1기념일 발포 사건 때부터 ‘제주도를 상당히 문제가 많은 지역이다. 더 나아가서 적성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5.10선거 거부가 제주도에서만 유일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제주도를 더욱 더 탄압을 강하게 해야 하는 지역, 그리고 제주도를 소위 레드아일랜드로 규정해 나</p>	<p>-3.1절사건의 3·1투쟁방침은 단순히 3·1절을 기념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p> <p>- 3·1절시위를 평계로 제주도민을 동원하여 시위를 하고 자기들 주장인 남한의 자유주의 내지 자본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미 군정을 전복하기 위한 투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었다.</p> <p>-1947년 3·1절 기념행사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정치 세력화하는데 성공한다.</p> <p>-박찬식의 말이 맞다. 남로당 5·10총선거 거부로 미군정에서는 레드아일랜드로 찍히게 된 것이다.</p>

가는 그런 과정을 밟아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민 : 제가 제주 출신 9연대 군인이었던 분들도 만나서 취재를 했거든요 9연대 정서라는 것은, 제주 출신 군인에게는 당연히 경찰들에게 피해를 당하는 도민들이 자신들의 이웃 또는 가족, 친척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국방경비대에 깔려 있던 정서가 그런 식으로 발현이 됐다. '적어도 우리는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조직이지 우리가 동족을 살상하는 조직은 아니다'라는 정신을 갖고 있었다.	김종민은 왜곡하고 있다. 제9연대에는 사상 검증도 하지 않고 좌익불순자들을 많이 모병하였다. 남로당 프락치 군인 장교들이 선동하여 9연대 군인들을 좌익사상으로 물들게 하였다.
노영기 조선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 국방경비대는 현지에서 모병을 하고 현지에서 훈련을 하고 현지에서 모든 것을 조달합니다. 현지의 정서가 그 군의 정서일 가능성성이 제일 높아요 왜 제주도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가, 왜 총을 들고 입산을 했는가 왜 선거를 거부하려하는가에 대해 누구보다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새로운 연대장이 오자마자 토벌작전을 한다는 것은 현지의 정서와는 정반대인 거죠	노영기 조선대교수는 남로당 프락치 군인들을 잘 모르고 있다.
국방경비대 제주도총사령관 고 박대령의 장례식은 6월 22일 남산에서 그의 영웅적 순직을 추앙하는 성대한 육군장을 지냈습니다. 그는 재직 중에 제주도에서 온 섬을 소란케 하는 소요도당의 폭동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피로하는 기색도 없이 그의 전심전력을 책임 완수에 정주했습니다.	
나래이션 : 누가 박진경 대령을 암살했을까 1948년 8월 고등군법회의 범인들은 9연대 소속 군인들이었다. 모두 순순히 범행을 인정했다.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은 문상길 중위였다. 재판은 암살의 배후를 밝히는데 집중됐다. 검찰은 한라산 무장대 총책인 김달	<p>-박진경대령 암살은 남로당의 지령하에 프락치 장교 문상길 중위가 주도하여 사병 프락치 손선후가 암살하였다.</p> <p>-박진경 대령을 M-1 총으로 직접 저격한 손선후 하사는 경북 출신으로 조선민주청년애국동맹조직에 가담하였고 대구폭동에 가담했다가 경찰의 추적을 피하여 국방경비대에 입대</p>

<p>삼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문상길 중위가 그의 부하인 손선호 하사에게 총을 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문상길 중위는 동족상잔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박대령 부임 후의 대내 공기는 전반적으로 변하였습 니다. 경찰과 협력하여 소요부대에 무조건 공격명령이 내려졌으며 도민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익렬 연대장의 동족상잔을 피하는 해결방침에 찬동해 평화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김달삼을 만났을 뿐 지령은 받지 않았습니다.</p>	<p>한 자이다.</p>
<p>나래이션 : 남해 군민에 서있는 동상하나 박진경 대령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동상이다. 30년 전 그의 양아들이 박진경 대령의 고향에 동상을 세웠다.</p> <p>000 : 비석에 보면 준동 공비 잔당 소탕작전 중 6월 18일 미명에 적의 흉탄에 장렬히 전사하셨다고 써있다. 명백한 거짓인거죠</p> <p>나래이션 : 박진경은 일본 오사카 외국어학과를 수석졸업한뒤 일본군이 됐지만 추모비엔 일본 유학시절에는 일본경찰의 의기인물(의심을 받던 인물)로 지목받았다고 써워있다. 4·3 당시 제주도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사태수습 명을 받은 공은 적의 흉탄에 장렬히 전사하셨다고 써있다.</p>	<p>-적의 흉탄은 맞은 말이다.</p> <p>남로당 사병세포인 위생병 손선호 하사가 일당 8명과 경계를 하는 동안 사무실내의 침대에서 취침중인 박진경연대장을 M-1총으로 저격하여 사살하니 그 손선호 하사는 적이 아닌가?</p>
<p>김광석 전 남해신문 기자 : 남해를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로 내세우고 싶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박진경 대령의 실체가 조금씩 알려지면서 2011년에 공원 정비 공사가 있었어요 그 때 한가운데 잘 보이던 동상을 외진 곳으로 옮겼던 거죠</p> <p>나래이션 : 20년전 제주의 한 시민단체가 철거를 요구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당시 모</p>	<p>김광석 전 남해신문 기자의 왜곡 된 말: 그 남해 군민동산은 6.25참전 용사, 베트남 참전 용사, 대간첩작전 중 전사한 군인들을 기리기 위하여 박진경대령 동상은 왼쪽으로 옮겼을 뿐이다.</p>

<p>습은 지금과 많이 달랐다.</p> <p>김광석 : 정비되기 이전에는 도로 쪽에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 중심부에 박진경 대령의 동상이 아래를 내려 보듯이, 호령하듯이 서 있었고요 그 앞에 아이러니하게도 돌하르방 2기가 동상을 호위하듯 서 있었어요</p>	
<p>주철희 역사학자 : 만주에서 생활했고, 독립 운동에 자기 아버지나 누가 관여했다라고 한다면 민족이란 개념도 강했을 것이고 민족이라는 중심을 두고 자주독립국가를 굉장히 꿈꿨을 거라고 보입니다. 제주에 와서 보니 제주사람들은 자주통일국가를 염원하고 있는데 미군이 들어와서 압제하고 있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다치고 이런 모습을 보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국가의 모습이 아니고 그래서 행동들로 나타났다고 저는 보는 거죠</p>	<p>주철희 역사학자는 제주4·3 사건을 왜곡되게 말하는 사람들중에 한사람이다. 제주사람들이 자주통일국가을 염원했다면 그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p>
<p>김종민 : 문상길의 행동에는 적어도 자기 확신이 있는 확신에 찬 확신범이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상관을 암살한 이유는 제주도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점이 문상길을 단순하게 상관을 암살한 암살범이 아니라 동족을, 특히 제주도민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으로 역사의 법정에서 재평가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p>	<p>-김종민은 ‘제주도인민유격투쟁보고서’ 책 실존을 알고 있으며 그 내용도 속속들이 보았을 것이다.</p> <p>-5월 10일에 제주읍에서 도당 대표로 軍責(김달삼)과 組責(김양근), 그리고 국경 프락치 대표로 오일균 대대장(부관 나희필 소위 대동)과 9연대 정보관 이윤락 중위 등이 회합을 갖고, *<u>특히 대내 반동의 거두 박진경 연대장 이하 반동장교들을 숙청하지 않으면 않된다. 고 모의한 점도 알고 있다.</u></p> <p>-남로당제주도당의 지하조직을 지휘하는 제주읍 특별위원회가 문상길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연대장 암살에 관여하였다.</p> <p>-문상길은 4·3 사건발발 당시 경비대 동원을 저지하여 유격대에 의한 제주읍 장악을 실패하게 하였던 책임이 있어 남로당 제주도당 측으로부터 엄청난 불신을 받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p>
<p>나레이션 : 문상길 중위가 유년시절에 살던 남평문씨 종택이 수몰되기 직전에 복원됐다.</p>	<p>-나레이션은 억지 주장을 부리고 있다.</p> <p>- ‘제주도민을 토벌하라는 명령을 내린 지휘관을</p>

기억은 수장된 역사를 꺼내는 첫 번째 일이 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내가 한일은 다만 1948년 그 사내가 안동 사람이 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 제주도민을 토벌하라는 명령을 내린 지휘관을 암살한 역사의 뒤안길에 묻힌 향년 스물셋 사내,

나래이션 : 훗날 박진경 대령은 을지 무공훈장에 추서됐다. 문상길 중위는 무덤하나 남아있지 않다. 그것이 그동안 4·3을 바라봤던 우리의 현대사였다.

박찬식 : 민족통일을 지향하고 제주도민을 어루만지려는 군인은 결국은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제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저는 문상길의 박진경 암살과 문상길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과정 자체가 우리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암시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래이션 : 해방과 점령이 교차하던 시대였다. 통일을 바라던 조국은 분단으로 치닫고 누군가는 저항을 누군가는 투항을 선택했다. 격렬하게 흘렀던 1948년 그 한가운데 있던 암살의 재조명이 필요한 이유다.

나래이션 :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학과 동맹등 각계 기관과 단체에서 구명운동이 벌어졌다. 일제히 성명을 내고 암살범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박대령은 천인공노할 야수적 학살을 자행했다“ ”암살동기는 애국순정에서 나온 민족정의의 수호에 있다“ 선고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하루 전에 내려졌다. 문상길 중위가 총살 당하기 전 최후 발언은 “여러분은 조선의 군대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라건대 미국의 지배아래 미군의 지휘아래

암살’했다의 주장은 ‘남로당제주도군사 인민유격대와 마을자위대를 토벌 진압하는 작전을 펼친 지휘관을 암살’했다고 해야 맞는 말이다.

-박찬식도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 실존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내용도 잘 읽어 보았을 것이다. 민족통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일이다.

-제주4.3사건 당시 남로당 편을 든 좌익신문: 해방일보, 조선인민보, 자유신문, 서울신문, 조선중앙일보, 현대일보, 독립신보, 중외신보의 기사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특히 해방일보는 성시백자금으로 운영됨)

-남로당대정면당 이운방의 증언: 마을 사람들이 문상길을 보고 “문 소위, 문 소위”라고 불렀으며 문상길은 말을 타고 거닥 거닥 와서 유유히 말 메어놓고 김달삼 집에 며칠 머무르다 갔다고 증언하였다.

-김익렬이가 문상길을 통해서 김달삼을 만나는

민족을 학살하는 조선군대가 되지말기를 바라며 저는 갑니다.” 였다.	데에 별다른 노력이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김종민 전 제주4·3중앙위원회 전문위원 : 박진경을 선택했을때는 서울에서 같이 근무할 때부터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이미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제주도에 파견했던 것이죠	'미군 말을 잘 듣는 군인'이라는 표현은 최선을 다해 반란을 진압하려 했던 박진경 대령의 희생과 군인정신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자 명예훼손이다.
박진경 대령은 상관으로서 만행과 학살명령을 했고, 천인공노할 야수적 학살을 자행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로당 프락치 군인들 입장에서 보면 100% 맞은 말이다. -브라운 대령이 운영한 4개 심문센터에서 경비대와 경찰로부터 연행되어 온 무장대 포로와 산중의 민간인을 포함한 3,000여 명을 심문했을 뿐, 실제로 주민을 학살했다는 기록이나 증거는 없다. -제11연대작전 중 생포한 남로당인민유격대는 물론 5·10선거 시 강제 입산했다가 선거후까지 잔류한 주민과 무장대 통제하에 있던 일부 중산간마을 주민도 연행하여 심문센터에 인계만 했을 뿐이지 직접 총살한 자료는 없다. -심문센터에서는 개인별 심사를 했는데 이 심사에는 군·경·미군 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이러한 합동심문팀에 <u>미군이 포함되었다는 것은</u> 연행자들에 대한 고문이나 구타 등 무리한 심사가 없었음을 말해주는 증거이다.
김익렬 연대장의 유고록에는 문상길 중위가 박진경대령을 민족 반역자로 처형하였다고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익렬의 기고와 유고가 있다. -기고는 김달삼과의 협상 직후에 쓰여졌고, 유고는 협상 30여년 후에 쓰여졌다. -4·3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것이라면 유고보다 기고가 신빙성이 높은 것이다. -기고에는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기록하고 유고에는 협상을 성공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김익렬의 유고는 거짓이 많고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가 없다.

붙임3

시민의견 - 2

가. 방송의 공적책임 및 사회통념 등 위반

방송내용	위반사항
<p>나래이션 : ”박대령은 천인공노할 야수적 학살을 지행했다“ ”암살동기는 애국순정에서 나온 민족정의의 수호에 있다“</p>	<p>방송은 대한민국에 반역행위를 일삼던 문상길을 미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사회통념을 벗어났다.</p> <p>문상길이 주장하는 애국과 민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전제하기에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위반되는 사회통념이다. 방송은 공산통일세력과 대한민국분단세력을 기저에 깔고 있다. 통일세력은 선이고 분단세력은 저항과 타도의 대상인 반동세력임을 암시한다. 문상길 중위는 공산통일을 꿈꾸었던 확신범이었다. 박진경 대령은 공산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생명을 무릎쓰고 제주도까지 부임한 진정한 군인이었다. 사상이 다른 남북이 통일국가를 이루면 공산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비추어볼 때 유엔의 지지를 받는 대한민국 세력의 선택이 옳았다. 대한민국 체제에서 문상길은 직속상관이자 대한민국 세력인 박진경 대령을 암살한 국사범이다.</p> <p>방송은 범법자를 열사처럼 다름으로써 본질까지 왜곡하였다.</p> <p>헌법재판소는 2000헌마238사건에서 살인자는 명예회복의 대상인 4·3희생자가 될 수 없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가 있다. 헌</p>

	<p>재 결정에 따르면 문상길같은 살인자는 명예회복의 대상인 희생자에서 제외된다. 범죄자가 4·3희생자로 선정되는 사례가 있지만 행위자체가 옳았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희생자 개념속에는 공산주의 이념을 잘못 선택한 결과 잘못임을 모르고 범죄행위를 한 점을 이해하여 주자는 의미가 깔려있다. 빨갱이 오명만은 제거해주자는 취지를 가지고 범죄행위의 정당화로 곤해되어서는 안된다. (※정치적 명예회복 대상으로서의 희생자에게는 배보상을 할 수 없음) 문상길 중위는 어린 나이에 공산주의 실체를 모른 채 공산주의 편에서 확신범이 되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는 식의 평가를 했어야 마땅했다.</p> <p>박진경 대령의 진압과 문상길 중위의 암살은 그 근본 원인이 남로당의 공산폭동에 있다. 4·3폭동과 반란은 진압을 불러왔고 진압에 대하여 항적한 것이 4·3의 희생을 키운 원인이었다. 방송은 이러한 본질에 대한 언급은 없다. 가만히 있는 선량한 제주도민을 미군과 군경이 탄압하여 의로운 저항을 했다는 식으로 역사왜곡을 하기 위해서다. 공산폭동을 봉기로 둔갑시키고 반일반미 프레임을 사용함으로써 북한의 주장을 이롭게 하고 있다. 공산폭동의 주동자들에게 책임을 묻지않고 이를 정당하게 진압한 미군과 군경에 책임을 지우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혈맹 미국에 부정적 감정을 고취시켜 대한민국 정체성과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강경진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남로당(공산당) 입장에서의 주장이다. 미군정과 정부의 범죄자 검거행</p>
--	---

	<p>위는 당연한 조치였고 적법타당한 조치였다. 범죄집단 남로당과 그에 부역한 행위를 은연중에 두둔하는 태도는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에 해당할 수 있다.</p> <p>좌우가 극심하게 대립되어 있는 제주4·3사건을 다룸에 있어서는 갈등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고심했어야 했다. 방송에서는 통합을 위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가족 시청시간대에 방송하여 통합을 저해하고 청소년의 정서에 해를 끼쳤다.</p>
<p>양정심 : 새로운 세상을 지금 꿈꾸는 사람들의 열망은 있지만 그 열망은 미군정과 국방경비대의 변화, 탄압 때문에 많은 평범한 제주도민을 죽음으로 몰아내는 단계고 이 죽음으로 몰아내는 단계를 조금이나마 막고자 한다면 수장을 제거해야만 하는 거잖아요</p>	<p>문상길을 위시한 남로당 세력의 꿈은 공산통일국가 건설로서 이를 두둔하는 주장은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와 관련된다.</p> <p>꿈이 무슨 꿈이었는지를 밝히지 않고 꿈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전제하고 있다. 공산국가를 방해하는 박진경을 제거해야만 했다는 주장은 북한이 주장할 소리이다. 불온한 꿈을 꾸고 실행에 옮긴 반란군을 진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을텐데 이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p>

나. 객관성 등 위반

방송내용	위반사항
<p>나래이션 : 1948년 5월 1일 미군 촬영반이 오라리 민가 방화사건을 항공에서 촬영하였다. 미군정은 그 긴박한 순간을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으로 촬영했다. 방화범은 우익청년단으로 밝혀졌지만 영상은 마치 준비된 것처럼 촬영되어 있었다. 미군정은 무슨 의도로 이 영상을 촬영한 것일까?</p>	<p>미군의 강경진압은 오라리 방화사건과는 무관한 일관된 전략이었다. 방화사건을 좌익이 일으킨 것으로 조작하지 않았다. 오라리 방화사건을 강경진압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p> <p>방송은 오라리 방화사건을 미국이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촬영한 것처럼 말한다. 오라</p>

<p>역사학자 박찬신 : 미군이 비행기 띠우고 촬영까지 하면서 5월 1일에 마치 한라산 무장대가 마을 방화를 한 듯이 그렇게 꾸며낸 조작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생각을 더 해볼게 5월 1일에 메이데이 필름이 나오잖아요? 그날 이미 한라산 무장대에 대한 전면 공격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5월 1일의 메이데이 필름은 조작된 필름이라기보다는 한라산 무장대에 대한 전면 공격을 하고 있다는 일종의 홍보, 과시용 필름이라고 볼 수 있죠</p> <p>나래이션 : 오라리 방화사건은 무장대를 강경진압하는 명분이 되었다.</p>	<p>리 방화는 좌익이 우익을 살해하였기 때문에 그 보복차원에서 우익이 일으킨 사건이다. 수많은 좌익의 방화사건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p> <p>문제는 방화사건의 원인을 은폐하고 단순히 우익이 방화한 사건이라는 사실만 언급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 할 수 없다.</p> <p>방송의 주장이 사실인지 미국 자료에서 확인되었는가? 방송은 가만히 있는 좌익에 대하여 우익이 방화를 하고 그 방화를 좌익이 한 것으로 조작하여 강경진압하였다 는 것인데 이와 같은 왜곡 방송은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갖게 한다.</p>
<p>나래이션 : 한라산 무장대가 제주도내 경찰지서를 습격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른바 4·3무장봉기다. 무장대는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의 산하조직이다. 봉기의 주된 명분은 5.10 단독선거 반대였다.</p>	<p>방송은 4·3무장봉기의 주된 명분은 5.10단독선거 반대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4·3무장봉기의 진짜 목적은 공산통일국가 건설이었다. 남로당 무장대가 꾸었던 꿈은 공산통일국가였음이 객관적 사실이다. 그러나 문상길을 의인화하기 위해서는 불편한 진실인 공산통일이란 말은 숨기고 민족통일이라는 말로 위장함으로써 시청자를 혼동케 하였다. 공산통일을 위해 폭동, 반란, 암살 등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봉기라고 볼 수도 없다.</p>
<p>6000여명이 끌려가서 고문을 받았고 박진경 연대장이 학살명령했다. 도민을 탄압했고 다 죽이려했기에 암살했다</p>	<p>도민을 다 죽이려했기에 암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첫째 공권력 편에 선 도민은 진압의 대상이 아니었다. 둘째 공권력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진압된 것이다. 즉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도전하는 범죄는 진압</p>

	<p>되어야 했다. 셋째 문상길의 반역과 선동행위가 도민의 죽음을 확대시킨 원인이다. 넷째 범죄를 중화시키려는 변명이고 선동이다.</p> <p>국방경비법 위반죄는 중범죄에 해당되는 국사범이다. 집단적 국사범이 제주도를 장악한 상황에서 이들을 진압하는게 국가의 임무인데 이들을 탄압했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진압을 탄압이라는 용어로 교체함으로써 폭동을 봉기로 둔갑시키고 범죄를 방치하게 유도한다. 결국 공산화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전술로 볼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탄압이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진압이 맞다. KBS와 방송출연자는 도대체 사상적 소속이 어디인가?</p>
박진경 연대장 강경진압 토벌작전으로 제9연대 군인들 반발로 탈영했다	이러한 주장은 허구이고 날조이다. 이미 남로당 김달삼과 문상길이가 탈영모의한 것을 실행한 것이다.
문상길이 암살은 도민을 위한 것이지 남로당 상부로부터 지령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한 주장은 살아남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김달삼과 문상길 회합에서 박진경을 살해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이다.
김종민 : 미군은 이 사건의 원인이나 그런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빨리 강경진압을 해서 선거를 무사히 치르는 것만이 자신들의 임무라고 미군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p>미군 입장의 의견을 들어 봤는가? 사건의 원인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있는 자는 미군이 아니라 방송이다.</p> <p>사건의 원인은 공산통일국가를 세우기 위한 남로당의 폭동반란에 있다. 이러한 위험세력을 강경진압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강경진압이 선거를 무사히 치루기 위해서였다는 주장은 물타기에 불과하다. 또한 미군정의 강경진압이 잘못이었다는 뉘앙스를 주고 있다. 일본에 원폭투하로 대한민국이 독립하였듯 강경진압으로 오늘날 제주가</p>

	대한민국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p>나래이션 : 미소의 입장이 달라서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넘겼다. 유엔은 한반도의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48년 1월 8일 유엔 한국임시위원회가 내한했다.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총선거를 소련과 북한이 거부하면서 48년 2월 26일 유엔임시총회에서 유엔한국위원회가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단독선거를 실시하자는 미국안이 채택되었다.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명백해졌다. 그것은 단독정부 수립을 뜻하기도 했으며 분단이 고착화되는 것을 의미했다. 미소 냉전체제에서 단선의 성공은 미군정의 최대과제였다. 그러나 제주에서 단선단정을 반대하며 4·3 무장봉기가 벌어진 것이다.</p>	<p>방송은 4·3의 명분은 밝히고 목적은 은폐하여 본질을 호도함으로써 국민 의식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p> <p>남북총선거를 소련과 북한이 거부하였다는 사실에서 통일국가를 반대한 측은 소련과 북한이었음을 알수 있다. 단선단정을 반대한 이유는 북한이 이미 실질적인 단독정부를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선단정을 반대하려면 북한을 상대로 했어야 했다. 4·3 폭동의 발생은 남한의 단선반대를 명분으로 공산통일국가 수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었다.</p>

다. 공정성 등 위반

방송내용	위반사항
<p>역사학자 박찬식 : 1948년 4월 말 남로당 무장대 총책 김달삼과 9연대장 김익렬 중령이 평화협상을 성사시켰다.</p>	대한민국 입장에 있는 군경과 역사학자 의견은 방송하지 않은 점에서 균형성과 공정성 위반이다.
<p>평화협상 합의 내용 : 72시간 내 전투중지, 무장해제 및 주모자들의 하산이 이루어지면 주모자들의 신병을 보호한다는 것이었다.</p>	김익렬의 협상은 선이고 강경진압은 악이라는 대립 구도로 짜져있다. 협상 앞에 평화를 넣어 협상에 명분을 더욱 실어준다. 군인이 반란세력을 진압하지 않고 협상하겠다는 자체가 이미 군인으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다. 남로당 폭동세력은 검거해서 사법처리할 대상이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폭동세력을 마주했을 때 체
<p>미군정 당국이 애당초 이 협상에 기대를 갖지 않았다. 강경진압으로 계속 일관하면서 오히려 한라산 무장대의 아지트를 확인</p>	

	<p>하는 정도로 협상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p> <p>포하여 자수와 자백 그리고 사법처리를 논의했어야 타당하다. 김익렬 중령처럼 신병보호 협상은 직무유기이고 반란세력을 인정하는 반역일 뿐이다. 좌익은 궁지에 몰릴 때 협상 전술을 사용한다. 좌익의 전술에 말려들지 않은 미군정의 강경진압 판단이 옳았다. 강경진압이 잘못인양 주장하는 태도는 남로당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 다양한 생각과 가능성을 상정해서 대한민국 입장의 의견도 방송했어야 했다.</p>
<p>나래이션 : 작전은 9연대 박진경 연대장이 직접 주도했다. 그의 강경 토벌작전은 전방 위적으로 펼쳐졌다. 양민과 폭도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폭도가 출현한 지역의 주민들을 무조건 연행해갔다. 무차별적 토벌에 살아돌아오면 다행이었다. 당시 수용소에 수용됐다 석방됐던 한 중학생의 석방 증명서다. 당시 오현중학교 2학년 현용준의 석방 증명서 '증명서, 아래의 인물은 1948년 6월 23일 미국인과 조선인이 합동 취조 후 석방함. 어린 학생이 무슨 죄가 있어 군화발에 짓밟혀야 했을까'</p> <p>김종민 4·3전문위원 : 정말 닥치는대로 청년들을 잡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잡아들여서 고문을 하고 어린 아이도 막 죽이고 연대장이 학살명령을 했다.</p> <p>나래이션 : 박진경 연대장이 부임한지 한달 여동안 군경 토벌대에 끌려간 사람은 약 6천여명에 달한다. 당시 무장대 수는 불과 500여명이었다. 명령에 불복하면 무조건 사살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총칼앞에 저항</p>	<p>무조건 토벌, 무차별적 토벌, 학살명령, 학살, 6천명을 끌고갔다, 명령에 불복하면 무조건 사살하라는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p> <p>학살 표현은 북한군이 625때 남한 좌익과 합세하여 우익을 살해한 경우나 히틀러가 유태인을 집단살해한 경우에 사용된다. 공산 게릴라전에 대응하여 인민유격대나 부역자 색출하기 위한 강경진압과정에서 불순분자를 사살하였고 이런 강경한 조치가 더 큰 주민의 희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다. 오늘날의 인권수준으로 진압하였다면 게릴라전은 성공하여 대한민국은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p> <p>혼란상황에서 중학생을 위한 석방 증명서 까지 교부했었다는 것은 적법절차가 있었다는 증거다. 혐의가 있어서 조사했을 것이고 실체진실을 밝히기 위해 당시 시대상황에서는 강압이 있었을 수가 있다. 범죄자에 대한 강압은 일반적인 사회관행이었다.</p>

할 수 없는 억울한 죽음들이 무수했다.	
박진경 연대장의 가혹한 토벌작전이 계속 되자 9연대 내부에서 반발이 일었다. 일부 군인들이 탈영을 한 것도 그즈음의 일이었다.	제11연대 작전기간 중에는 제9연대 군인 탈영사고는 없었다. 박진경 연대장의 강경 진압으로 인한 9연대 제11대대의 집단탈영 주장은 허구이고 날조이다.
나래이션 : 박진경 연대장의 강경진압 방침은 김익렬 회고록에서 확인이 된다. 그는 9연대장 취임식 자리에서 제주폭동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토벌의지를 나타낸 것이지 학살한 적은 없다.
김창후 전 제주4·3연구소소장 : 해안 마을 중에서도 외도, 삼양, 화북 여기는 강력한 경찰서 지서가 있었어요 지서가 있는데, 지서가 있어서 계속 그 경찰들한테 탄압을 받고 고충을 당하는데 그러면 내가 5월 9일에 투표를 거부하기 위해서 산에 도망갔다가 내려오면 이 경찰들이 나를 가만하둘 건가? 이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도 외도 사람들, 삼양 사람들, 화북 사람들 투표 안 하려고 5월 9일에 대거 산으로 가버렸어요	경찰에게 탄압을 받고 고충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 이유를 국민이 알게되면 탄압이 아니고 진압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경찰의 남로당 무장세력 진압은 당연한 국가행위이다. 남로당 무장세력과 부역세력의 만행이 잘못이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 대한민국 선거는 거부하고 입산한 자들을 옹호하는 발언은 좌편향되었다.
나래이션 : 선거를 앞두고 5.10선거를 거부해 산으로 가버린 사람들, 조국의 분단을 원치않아 입산한 사람들과 무장대의 강요로 투표를 거부한 사람도 많았다. 왜 제주는 미군정이 치르는 단독선거에 이토록 반감이 컸을까	조국의 분단을 원치않아 입산하였다는 주장 역시 위장된 표현이다. 그들은 공산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인공기를 개양하고 적기자를 부르며 김일성 장군 만세를 불렀다. 그래서 미군정의 단독선거에 반감이 컸던 것이다.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 무엇보다도 일제 관리를 그대로 등용하잖아요? 일제 강점기에 이 한반도의 치안을 담당했던 것은 경찰이잖아요 친일경찰인거죠	체제유지를 위해 친일경찰 등용은 좌익적 결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선택이었고, 결과적으로 공산주의를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데 성공했다.

<p>식량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친일지배가 여전히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당시의 평범한 사람들도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p> <p>나래이션 : 해방은 또 다른 점령의 시작이었다. 제주에서 미군정보다 여운형등 선각자들이 뿌리를 둔 제주인민위원회의 영향력이 더컸다. 체제유지의 어려움을 느낀 미군정은 요직마다 친일경찰을 그대로 등용했다. 그러나 흉년과 역병에 미국정책마저 실패로 돌아갔다. 가난과 굶주림이 계속되었다.</p> <p>(양과자는 독약이다 등 미군 반대시위 현수막을 보여줌)</p>	<p>방송은 일제강점기 때 근무한 경찰을 그대로 등용한 것에 불만을 표시한다. 제주의 요직마다 친일경찰을 배치했다고 하며 반일감정을 조장한다. 그러나 친일경찰 전체가 적극적 친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소극적 친일은 평범한 백성은 거의 모두 이에 해당되어 이해할 수 있다. 미군정이 친일경찰 등용한 것이 친일을 정당화한 것처럼 의미를 연결시킨다. 그래서 제주도민이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고 도출한다. 그러나 미군정은 일본과 전쟁한 승전국이다. 일본을 두둔하지도 않고 친일경찰을 정당화하지도 않는다. 다만 당시 제주도에 자유민주 세력인 우익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인 좌익의 영향력이 커서 좌익세력을 제압 할 목적으로 친일경찰을 활용한 것뿐이었다. 친일경찰은 좌익을 제압하고 자유민주 국가 수립에 공헌한 점에서 친일의 오명을 상쇄하는 애국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당시 좌익을 극복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출산시킨 미국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세가 마땅하다. 일본경찰보다 좌익 인민군이 더 악질이어서 625때 피난 내려오셨다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미루어 볼때도 친일경찰을 등용하여 좌익을 척결한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다.</p> <p>해방은 또 다른 점령의 시작이었다는 말은 미군이 마치 제주를 점령한 것처럼 들리게 하여 반미감정을 부추긴다. 점령은 해방직후에서 우리나라가 건국될때까지 미군이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한 임시적인 조치였음이 팩트다.</p>
박찬식 : 47년도에 외부에서 들어온 서북	서북청년단의 활동은 남로당 입장에서는

<p>청년단과 응원경찰들의 횡포로 계속 억눌려서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분노가 쌓였던 게 폭발했다.</p>	<p>횡포가 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애국행위였다. 서청은 반역세력 확장저지와 좌익 와해를 위한 공익활동을 하였다.</p>
<p>나래이션 : 미군정은 1947년 3.1절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없이 좌익의 폭동으로 규정했다. 파업주모자의 검거에만 몰두했다. 매질과 고문으로 제주청년들이 죽어나갔다. 미군정을 향한 억압과 울분속에서 고립된 작은 섬은 그렇게 점차 탄압의 대상이 되어갔다.</p> <p>박찬식 : 미군정 당국은 이미 4월 3일 무장봉기 이후부터 그 이전 3.1기념일 발표 사건 때부터 ‘제주도를 상당히 문제가 많은 지역이다. 더 나아가서 적성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5.10선거 거부가 제주도에서만 유일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제주도를 더욱 더 탄압을 강하게 해야 하는 지역, 그리고 제주도를 소위 레드아일랜드로 규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밟아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p>	<p>미군정 하에서 조병옥 경무부장이 진상규명을 하였다. 3.1사건의 진실은 남로당 주도의 좌익 폭동이었고 파업주모자는 검거하는게 당연하다. 당시 매질과 고문은 범죄자들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사실상의 규범이었다. 고문으로 죽은 사람은 없었다. 제주가 탄압의 대상이 되어간 것이 아니라 진압의 대상이 되어 간 것이었다.</p> <p>미군정은 제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 제주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적성지역이 사실이었다. 5.10선거를 부정하고 북한 선거에 5만명 이상이 참여한 것은 그 증거다. 그래서 제주 좌익을 진압하여 제주를 레드아일랜드가 되지 않게 하려고 했다.</p>
<p>김종민 : 제가 제주 출신 9연대 군인이었던 분들도 만나서 취재를 했거든요 9연대 정서라는 것은, 제주 출신 군인에게는 당연히 경찰들에게 피해를 당하는 도민들이 자신들의 이웃 또는 가족, 친척이거든요 그러나 당연히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국방경비대에 깔려 있던 정서가 그런 식으로 발현이 됐다. ’적어도 우리는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조직이지 우리가 동족을 살상하는 조직은 아니다’라는 정신을 갖고 있었다.</p>	<p>남로당이 동족을 살상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다. 무고한 어린아이까지 참혹하게 죽이고 공산주의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사와 심지어 KBS제주방송국 직원들을 포함한 수많은 양민을 죽였다. 군경의 복장을 입고 살해한 후 그 책임을 군경에게 뒤집어 씌우는 민심이반책까지 썼다. 진실은 결코 가려질 수 없다.</p>

<p>노영기 조선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 국방경비대는 현지에서 모병을 하고 현지에서 훈련을 하고 현지에서 모든 것을 조달합니다. 현지의 정서가 그 군의 정서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왜 제주도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가, 왜 총을 들고 입산을 했는가 왜 선거를 거부하려하는가에 대해 누구보다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새로운 연대장이 오자마자 토벌작전을 한다는 것은 현지의 정서와는 정반대인 거죠</p>	<p>제주도민들이 분노하여 총을 들고 입산하고 선거를 거부한 것은 토벌작전 때문이라고 귀착시키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이다.</p> <p>제주도민들 중의 일부에 해당하는 남로당 세력과 그 추종세력이 분노하여 총들고 입산하고 선거부정하였다. 부화뇌동한 자들 외에도 강요에 못이겨 참여한 자들도 있었다. 그러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반역에 동조하지 않고 대한민국 편에 선 자들도 많았다. 제주도민 전체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추종했던 사람들인 것처럼 매도해서는 안된다.</p>
<p>국방경비대 제주도총사령관 고 박대령의 장례식은 6월 22일 남산에서 그의 영웅적 순직을 추앙하는 성대한 육군장을 지냈습니다. 그는 재직 중에 제주도에서 온 섬을 소란케하는 소요도당의 폭동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피로하는 기색도 없이 그의 전심전력을 책임 완수에 정주했습니다.</p>	<p>박대령의 장례식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암살범을 규탄함이 대한민국 정서였음을 보여준다. 당시 언론기사처럼 제주를 소란케하는 소요도당의 폭동이 사실이었다. 그 당시까지 제주도에서는 공산당에게 학살당 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토벌에 나서지 않으려는 분위기였다. 그런 중에 박진경 대령의 죽음이 제주도 공비토벌에 앞장서게 하는 도화선이 되었고 군내 좌익 숙군에 박차를 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박대령은 죽어서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호국의 영령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방송은 당시 언론보도가 지금에 와서 평가할 때 잘못된 평가였다는 것을 말하려는 의도를 깔고있다.</p>
<p>나래이션 : 누가 박진경 대령을 암살했을까 1948년 8월 고등군법회의 범인들은 9연대 소속 군인들이었다. 모두 순순히 범행을 인정했다.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은 문상길 중위였다. 재판은 암살의 배후를 밝히는데 집</p>	<p>문상길은 김달삼과 연계된 남로당 프락치였다.</p> <p>따라서 공산통일국가에 방해가 되는 남로당 소탕작전을 저지하려고 박진경 대령을 암살하였던 것이다. 남로당 김달삼과 반란</p>

<p>중됐다. 경찰은 한라산 무장대 총책인 김달삼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문상길 중위가 그의 부하인 손선호 하사에게 총을 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문상길 중위는 동족상잔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박대령 부임 후의 대내 공기는 전반적으로 변하였습니다. 경찰과 협력하여 소요부대에 무조건 공격명령이 내려졌으며 도민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익렬 연대장의 동족상잔을 피하는 해결방침에 찬동해 평화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김달삼을 만났을 뿐 지령은 받지 않았습니다.</p>	<p>군 문상길은 상명하복의 지휘관계가 아니었지만 공산통일국가 목표를 향해 함께 활동한 공범관계였다. 이 점에서 지령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동족상잔을 피한다고 하면서 동족을 무참히 살해했다. 공산통일국가를 방해하는 반동은 동족이 아니라고 여긴다. 좌익들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선전선동이다.</p>
<p>나래이션 : 남해 군민에 서있는 동상하나 박진경 대령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동상이다. 30년 전 그의 양아들이 박진경 대령의 고향에 동상을 세웠다.</p> <p>000 : 비석에 보면 준동 공비 잔당 소탕작전 중 6월 18일 미명에 적의 흉탄에 장렬히 전사하셨다고 써있다. 명백한 거짓인거죠</p> <p>나래이션 : 박진경은 일본 오사카 외국어학과를 수석졸업한뒤 일본군이 됐지만 추모비엔 일본 유학시절에는 일본경찰의 의기인물(의심을 받던 인물)로 지목받았다고 써워있다. 4·3 당시 제주도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사태수습 명을 받은 공은 적의 흉탄에 장렬히 전사하셨다고 써있다.</p>	<p>적의 흉탄에 전사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남로당은 대한민국에 선전포고를 한 공산세력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적이 맞다. 남로당(공산당)이 적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을 적으로 본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을 하는 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문상길은 국군복장을 하였을 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향하는 공산주의자였다.</p>
<p>김광석 전 남해신문 기자 : 남해를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로 내세우고 싶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박진경 대령의 실체가 조금씩 알려지면서 2011년에 공원 정비 공사가 있었어요 그 때 한가운데 잘 보이던 동상을</p>	<p>박진경 대령의 무슨 실체가 알려졌는지 근거가 없다. 박진경 대령에 부정적 요소로 제시한 것들은 사실이 아니기때문이다. 박진경 대령의 고향 남해에 있는 동상이 문제가 있다고 깍아 내린다. 동상 비문에 적의 흉탄에 맞아서 사망했다는 문구도 사실</p>

<p>외진 곳으로 옮겼던 거죠</p> <p>나래이션 : 20년전 제주의 한 시민단체가 철거를 요구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당시 모습은 지금과 많이 달랐다.</p> <p>김광석 : 정비되기 이전에는 도로 쪽에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 중심부에 박진경 대령의 동상이 아래를 내려 보듯이, 호령하듯이 서 있었고요 그 앞에 아이러니하게도 돌하르방 2기가 동상을 호위하듯 서 있었어요</p>	<p>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대한민국의 적이 남로당(공산당)이 아니라면 우리나라가 공산국가라는 말인가?</p> <p>박진경 대령은 제주의 공산당을 호령하듯 서있고 박대령을 추모하는 제주도민들은 돌하르방처럼 호위하고 있다고 이해함이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다.</p>
<p>주철희 역사학자 : 만주에서 생활했고, 독립운동에 자기 아버지나 누가 관여했다라고 한다면 민족이란 개념도 강했을 것이고 민족이라는 중심을 두고 자주독립국가를 굉장히 꿈꿨을 거라고 보입니다. 제주에 와서 보니 제주사람들은 자주통일국가를 염원하고 있는데 미군이 들어와서 압제하고 있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다치고 이런 모습을 보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국가의 모습이 아니고 그래서 행동들로 나타났다고 저는 보는 거죠</p>	<p>방송은 공산통일국가를 꿈꾸고 있던 문상길을 미화하기 위해서 자주독립국가라는 포장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문상길이 제주사람들은 자주통일국가를 염원하고 있는데 미군이 들어와서 압제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하여 행동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것 역시 정확한 기술이 아니다. 문상길과 상당수 제주사람들은 공산통일국가를 염원하여 미군의 진압 대상이 되었고 진압에 남로당은 대한민국에 선전포고하고 반란까지 일으켰음이 역사적 사실이다.</p>
<p>김종민 : 문상길의 행동에는 적어도 자기 확신이 있는 확신에 찬 확신범이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상관을 암살한 이유는 제주도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점이 문상길을 단순하게 상관을 암살한 암살범이 아니라 동족을, 특히 제주도민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으로 역사의 법정에서 재평가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p>	<p>문상길이 군내부에 침투한 남로당 프락치인 사실은 감추고 제주도민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제주도민을 공산체제의 노예로 전락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역행위를 저지른 중범죄인일뿐이다. 그의 반역행위는 수많은 희생자를 발생하게 한 원인으로 평가받아야 한다.</p>
<p>나래이션 : 문상길 중위가 유년시절에 살던 남평문씨 종택이 수몰되기 직전에 복원됐</p>	<p>문상길 의인화 작업은 사회통념에 반한다. 방송은 문상길의 종가 남평문씨가 있는 안</p>

<p>다. 기억은 수장된 역사를 꺼내는 첫 번째 일이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내가 한일은 다만 1948년 그 사내가 안동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 제주도민을 토벌하라는 명령을 내린 지휘관을 암살한 역사의 뒤안길에 묻힌 향년 스물셋 사내,</p>	<p>동까지 찾아간다. 문상길의 조상이 일제에서 독립운동한 사실을 부각한다. 문상길 중위는 무덤하나 없다고 하며 감정을 자극시킨다. 문상길은 공산통일을 지향하고 제주도민을 공산치하에 빠뜨리려 했던 확신범이다. 역사의 법정에서 다시 평가될 수 없다. 암살의 재조명은 문상길의 의인화가 아니라 을지 무공훈장에 추서된 박진경 대령의 영웅화 작업이 되어야 한다. 박진경 대령은 제주도민을 토벌하라고 명령하지 않았고 제주도에 있는 공산폭도를 토벌하라고 명령했다.</p>
<p>박찬식 : 민족통일을 지향하고 제주도민을 어루만지려는 군인은 결국은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제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저는 문상길의 박진경 암살과 문상길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과정 자체가 우리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암시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p>	<p>박찬식 역사학자는 박진경 대령에 대하여 하여야 할 말을 문상길에게 하고 있다. 자유통일을 지향하고 제주도민을 지키려던 박대령이 불순분자에게 암살당하였는데 오히려 암살자를 칭송하고 있으니 도저히 국민으로서 용납이 안되는 인식이다.</p>
<p>나래이션 : 해방과 점령이 교차하던 시대였다. 통일을 바라던 조국은 분단으로 치닫고 누군가는 저항을 누군가는 투항을 선택했다. 격렬하게 흘렀던 1948년 그 한가운데 있던 암살의 재조명이 필요한 이유다.</p>	<p>나래이션은 대한민국에 저항은 선이고 투항은 악이라는 의미가 엿보인다. 이러한 의미를 노골화하기 위해 암살의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힌다.</p>
<p>나래이션 :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학과 동맹등 각계 기관과 단체에서 구명운동이 벌어졌다. 일제히 성명을 내고 암살범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박대령은 천인공노할 야수적 학살을 자행했다“ ”암살동기는 애국 순정에서 나온 민족정의의 수호에 있다“ 선고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하루 전에 내려졌다. 문상길 중위가 총살 당하기 전 최후 발언은 “여러분은 조선의 군대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라건대 미국의 지배아</p>	<p>암살범의 석방을 요구한 기관과 단체는 사회주의·공산계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당시 좌익계열이 국민 다수인데다가 공산계열의 선전선동이 일상화 되어있었기 때문이다. 공식언론은 박대령을 영웅으로 보도했고 장례식은 국군장으로 치러졌다. 이는 박대령이 천인공노할 야수적 학살을 자행했다는 주장이 좌익계열의 주장임을 말해주고 있다.</p> <p>암살동기가 애국순정이었다거나, 민족정의</p>

	<p>를 수호하기 위함이었다고 할 때 국가와 민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결부된다. 이런 관련성을 염두하면 문상길을 미화하지 못한다. 따라서 암살동기를 이해할 때는 숨은 동기를 이해 해서 바르게 평가를 받도록 했어야 했다.</p> <p>문상길은 고등군법회의에서 “역울합니다. 내가 전 연대장을 독살만 시켰다면 지금쯤 평양에 가서 최고영웅훈장을 달을 터인데, 그걸 못해서 역울합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문상길은 의인이 아니라 골수 남로당 공산주의자이고 제주를 북한독재치하에 바치려고 한 민족반역자였다.</p> <p>방송은 공산통일의 음흉한 목적을 민족과 제주도민이라는 감성적 언어속에 끌어들여 국민을 위장평화의 전술로 노략하려는 위험성이 역력히 보인다.</p> <p>문상길의 최후발언을 강조한 것은 책임을 미군에 지우고, 반미감정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문상길의 사상이 공산주의에 속해있기 때문에 미국을 적으로 생각하였다. 당연한 결과로 미국의 역할에 대한 고마움이 없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다.</p>
--	--

라. 명예훼손 등

방송내용	위반사항
김종민 전 제주4·3중앙위원회 전문위원 : 박진경을 선택했을때는 서울에서 같이 근	'미군 말을 잘 듣는 군인'이라는 표현은 최선을 다해 반란을 진압하려 했던 박진경

무할 때부터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이미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제주도에 파견했던 것이죠	대령의 희생과 군인정신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자 명예훼손이다.
박진경 대령은 상관으로서 만행과 학살명령을 했고, 천인공노할 야수적 학살을 자행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김익렬 연대장의 회고록에는 문상길 중위가 박진경대령을 민족 반역자로 처형하였다고 한다.	박진경 대령을 민족 반역자로 보는 인식은 공산주의 입장에서의 인식이다. 민족 반역자는 박진경 대령이 아니라 문상길 중위라고 설명했어야 했다.